Ⅱ. 상 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3. 화폐의 유통
- 4. 무 역

Ⅱ. 상 업

1. 도시상업

조선시대 도시상업의 성격을 구명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 방면의 문헌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나, 과거 몇몇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여 그 대표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六矣廛의 성격을 살피고자 한다.

육의전이라 하는 官府 어용상업기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직업상인을 필요로 하였던 관인지배자들이 그들 상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상업경영을 보장하는 대신 그 代賞給付로서 과중한 국역을 부과시켜 상인계급의 이윤과 재산을 침해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 보려는 육의전은 그 성립, 종류와 상품, 건축구조를 비롯하여 서구의 길드를 방불케 하는 조직과 어용상전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등을 해명하고, 그 발전과정을 언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조선시대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은 국초 이래로 농본주의를 국시로하여 공업의 발달을 억압하고 상업의 자유로운 신장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의 생산력이 빈약한 데다가 교통의 불편으로 상업거래가 번영치 못하였으며 아울러 상업상의 과세에서 가렴주구가 심하였고, 도시에서의 어용상인, 지방에서의 시장상인에게 각각 상업상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商賈의 자유로운 발전을 방해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상업은 농업과 가내수 공업이 밀접히 결합되어 있던 만큼 극히 일부의 임시적인 교환이 각 개인간에 이루어진 것 이외에 전국적으로 1천여를 해아리는 향시가 그 지배적인형태였으나, 약간 진보된 상업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첫째, 도시 상업기관으로서 서울 公廊商店인 市廛과 거기에서 발달된 육의 전, 그리고 개성·평양 등 도시의 상설점포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부 및 여러 관아의 수요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발생·유지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객주·여각이 지방도시의 화물집산지에 존재함으로써, 화물의 도 매·화물보관의 창고업·위탁판매업·화물의 운송업·고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금융업 등을 겸하는 상업기관의 구실을 하였다.

셋째, 행상(주로 보부상)이 있는데, 이들은 상업집산지에서 구입한 일용잡화 물을 등에 지거나 보로 싸서 지방 향시 또는 산간벽지를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였다.

그 가운데 서울 시전은 그 기능으로 보아 도시상업의 대표적 존재였고 후에 발생한 육의전은 官府에 대하여 막대한 국역을 부담하는 반면, 그 판매하는 상품에 관하여 독점판매권을 행사하는 특수한 상업조합이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시전은 문헌상으로 신라 소지왕 12년(490) 3월에 이미 보이고 있으며」 그 뒤에 동시2)·서시 및 남시3)로 발달하였다. 이는 일본 京都의「동시」·「서시」나 당의「町」과 거의 동일한 상업기관으로서, 市典4)을 두어 이것을 감독 영솔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의 日市(鄉市)로서의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상업이 있었음은《新唐書》신라전과《鷄林類事》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건국 초인 태조 2년(913) 3월에 이미 시전을 설립하였으며, 특히 그 위치를 도성 중심지에 택하여 일대 미관을 이루었다고 하며,5) 더욱 이 고려 말엽 개성 시전의 번영은 외국 사신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듯 하다.6)

고려시대의 시전에는 그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개경에 京市署7)를 설치하여

^{1)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소지왕 12년.

^{2)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지증왕 10년.

^{3)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효소왕 4년.

^{4) 《}三國史記》 권 38. 雜志 7. 職官 上.

⁵⁾徐 兢,《高麗圖經》刊 3,城邑 坊市.

⁶⁾ 董 越、〈朝鮮賦〉(《海東繹史》 권 25).

^{7)《}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시전의 물가조절과 시전의 상황을 감독케 하였다. 경시서는 상행위의 감독만이 아니라 상품의 종류에 관하여도 통제를 가하여, 관이 허가한 물건 이외에는 임의로 매매할 수 없었으며, 이를 범할 경우에는 극형에 처했던 일도 있었다.8) 또 경시서로부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받고 稅印을 찍은 후에 비로소매매할 것을 허락한 일도 있었다.9) 이와 같은 유래를 가진 시전은 조선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계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서울 시전의 성립

고려 초의 수도건설은 궁궐을 세우고 방리를 나누며 시전을 세우는 것이 3대 중요사업이었다. 조선 초에 있어서도 역시 시전을 세우는 일은 태조 천도 이래 4대에 걸쳐 궁궐의 건축·坊里의 구획과 아울러 계속 수행된 중요사업의 하나였다. 즉 간선도로 좌우 양측에 막대한 국비와 노동력을 동원하여 定住商人의 점포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상민을 초치하여 최대한의 어용적 상업경영에 종사케 하고, 관부 및 귀족층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본시 옛부터 왕도에는 「前朝後市」10)를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는데,《萬機要覽》의 各廛條에서 市의 성격을 단적으로 볼수 있다.11)

《만기요람》에 보이는 市는 小民의 교역장소로서 신라시대의 이른바「日早晚爲市」의 시와 동일한 성격으로 이해된다. 즉 점포를 갖춘 商廛이 아니라, 행상이 몰려들어 교역하고 물러나는 이른바「場」을 가리키는 것이다. 《만기요람》을 통해 서울 신무문 밖 경무대 앞에「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12) 이것이 곧 위에 말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은 이 신무문 밖뿐만 아니라 그 뒤 雲從街, 즉 지금의 세종로(종로십자로)를 비롯한 梨峴,

^{8) 《}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市估 신우 7년 8월.

^{9)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市估 공양왕 3년 3월.

^{10)《}萬機要覽》財用編 5, 各廛.

¹¹⁾ 위와 같음.

¹²⁾ 위와 같음.

七牌 등지에도 형성되어 상품이 교역되었다.13) 그러나 이들 장시는 처음 한 양으로 천도했을 당시에 운종가 등지에 섞여 있어서 상업질서가 서지 않고 혼란한 상태였다.

장시의 자연발생과 그 무질서는 이와 같았으나, 관부로서의 시전건설은 이보다 훨씬 앞서 이미 시작되었다. 즉 태조 2년에는 領書雲觀事 權仲知가 왕도 시전에 대한 도안을 올린 바 있으며,14) 정종 원년에는 惠政橋로부터 창덕궁 동구까지 행랑시전 좌우 800여 칸을 營造하려 하여 착수한 일이 있었다.15) 그러나 실제로 완성되지는 못하였으며, 더구나 송도 천도의 정치적 분규로 인하여 계속적인 시전의 영조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태종이 다시 한양에 천도하면서부터 시전 건축은 본격화되었다. 즉 태종 10년 2월에는 먼저시전의 지역적 한계를 정하여 大市는 長通坊(관철동·장교동), 미곡잡물은 동부 蓮花洞區(연지동), 남부 蕙陶坊(을지로 2가), 서부 혜정교(종로 1가 복청교), 북부 안국방(안국동), 중부 廣通橋(남대문로 광교), 소와 말은 장통방 하천변에서 각각 매매하도록 하고, 閩巷/市는 각각 사는 곳의 문앞에서 영위하도록하였다.16) 동시에 그 감독 기관으로 京市監을 다시 설치하여 시내 상업교역에 관한 물자 조절, 欺誑 방지, 奸盜 단속, 商稅 징수 등의 일을 주관케 하였으며, 별도로 淸齋監을 설치하여 시가의 청결을 감독케 하였다.17)

이 지역적 한계를 기준으로 태종 12년 2월부터는 영조의 실제공사에 착수하였다. 즉 제1차로 그 해 2월부터 4월까지 혜정교로부터 창덕궁 동구에이르는 800여 칸의 좌우행랑을 건조함으로써 수도 상가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태종 10년의 계획 이래 계속된 영조공사는 태종 14년 7월까지 5년간에 4차례 실시되었다. 제2차로 태종 12년 5월에 궐문에서 貞善坊 동구까지행랑 472칸이 건조되었고,18) 제3차로 12년 7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종루로부터 경복궁까지와 창덕궁으로부터 종묘 앞 누문까지, 그리고 숭례문

^{13) 《}太宗實錄》 권 15, 태종 10년 정월 을미.

^{14) 《}太祖實錄》 권 3, 태조 2년 계유.

^{15) 《}定宗實錄》권 1. 정종 원년 을묘.

^{16) 《}太宗實錄》권 15, 태종 10년 2월 갑진.

^{17) 《}太宗實錄》 권 23. 태종 12년 3월 무신 · 4월 정사 · 병인.

^{18) 《}太宗實錄》 권 23, 태종 12년 5월 을사.

〈표 1〉 태종 연간에 건조된 각 궁궐·관	관서·행랑의 면적표
-------------------------	------------

차 순	시기	적 요	면적(칸수)
제1차	12년 2월~12년 4월	혜정교~창덕궁 좌우행랑	800여 칸
제2차	12년 5월	대궐문~정선방 동구 행랑	472칸
	12년 7월~13년 5월	경복궁 남방~종묘 앞 좌우행랑	881칸
제3차	"	종루~경복궁)
^ 3^	"	창덕궁~종묘 앞 누문	} 480칸
	"	숭례문(남대문) 전후	J
제4차	14년 7월	종루~남대문	
^I 4^F	"	종묘 앞 누문~동대문 좌우행랑	

(《太宗實錄》)

〈표 2〉 태종 연간에 징발된 한양 행랑조성 役丁

시 기	역정목공	승 군	선 군	감 독	비고
					사망자 11명
12년 2월 을축		10,000		개 천 도 감	병 자 200명
					병사자 64명
12년 2월 경오	1,535	500		행 랑 조 성 도 감	
12년 7월 기축	200	1,000		행 랑 조 성 도 감	
12位 / 包 / 1等	(목공)	1,000		2 2 7 7 7	
13년 2월 을묘	2,141	500		督 役 22	
10년 2월 일표	2,141	300		領 事 3	
		600	1,000	공조판서	목재는 강원·
14년 7월 임진		(경기)	(황해도)	관령 朴子靑 감독	충청 해변 각
		(10/1)	(も에上)	李暕 등 22인	군에서 조달
계	3,876	12,600	1,000		
총 계		17,4	76명		

(《太宗實錄》)

전후까지를 합하여 총 1,360칸이 완성되었으며,¹⁹⁾ 제4차로 태종 14년 7월에 다시 종루로부터 남대문까지와 종묘 앞 누문으로부터 동대문까지에 좌우 행

^{19) 《}太宗實錄》 권 24, 태종 12년 7월 기축 및 권 25, 태종 13년 4월 을축·5월 정미.

랑음 조성하였다.20)

그 동안 각 도에서 징발된 연인원은 游手·승려·목공·船軍 등 17,000여명에 달하였으며, 그 공사로 인한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그 동안의 동원수와 건조된 행랑을 일람하면 앞의〈표 1〉·〈표 2〉와 같다.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시전 가운데에서 특히 특정상품 전매, 즉 禁亂廛의 특권과 국역부담의 의무를 갖는 일부 상전을 六矣廛이라 하면 그것은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먼저 부담의 면에서 보면 조선 초에 이미 일반 商賈, 특히 관부 건조의 公郞을 사용하는 시전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였음은 《경국대전》을 통해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 법규로서 확정되기 전에도 태종 7년 평양부 尹睦은 상소를 통해 행상의 통제와 납세 의무를 규정하려 하였고,210 또 태종 15년 4월에는 상고에 대하여 과세의 비율을 정하였으며, 상고를 공랑상인・坐質상인・행상인 등 셋으로 구분하였다. 「공랑상인」은 관부에서 제공한 공랑에서 상업을 하는 관부제공의 定住상인(후의 육의전)이며, 「좌고」는 공랑 이외의 임시점포, 즉 假家상인(우리말로「가게상인」으로 노변에 천막을 친임시점포를 말함)으로서, 뒤에 육의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군소상점인 假家商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행상」은 관부에 등록하여 행상의 허가를 받은 상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상행위에 대한 과세를 넘어서서 국역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육의전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대체로 관부의 수요에 따라 부과되는 임시 부담금, 궁중·부중의 수리 도배를 위한 물품 및 경비 배당, 왕실의 冠婚喪祭는 물론 중국에 해마다 수 차례 파견되는 각종 사절의 세폐 및 수요품 조달 등이 그 중요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국역부담의 상전을 「有分各廛」이라 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규모를 가진 여섯 개 상전을 「육의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 발생시기를 고찰함에 앞서 육의전과 그 전제

^{20) 《}太宗實錄》권 28, 태종 14년 7월 임진.

^{21) 《}太宗實錄》 권 14, 태종 7년 10월 기축.

가 되는 유분각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분각전」이라 불리는 국역부담의 어용상단은 그렇지 않은「무분각전」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各廛中稍實者'²²⁾에 대하여 그 이익 정도를 계량하여 각 기 국역을 책정하였던 것이다.

이 유분각전의 명칭과 역분을 순조시대에 저작된 《만기요람》에 의거해 정 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유분각전

명 칭	역 분	명 칭	역 분
線廛(縇廛・立廛)	10분	苧布廛	6분
綿布廛	9분	布廛	5분
棉紬廛	8분	内魚物廛	5분
紙廛	7분	外魚物廛	4분
青布廛	5분	生鮮廛	3분
煙草廛	3분	鍮器廛	2분
望門床廛	3분	衣廛	2분
新床廛	2분	綿子廛	2분
東床廛	1분	履廛	2분
壽進床廛	1분	樺皮廛	1분
上米廛	3분	茵席廛	1분
下米廛	3분	眞絲廛	1분
門外米廛	2분	清蜜廛	1분
雜穀廛	3분	京鹽廛	1분
髢髺廛	1분	內長木廛	1분
鐵物廛	1분	煙竹廛	1분
內外匙箸廛	1분	牛廛	1분
馬廛	1분		

이 밖에 국역의 부담이 없는 무분각전은 外長木廛 등 55전이 있어 모두 91전이며, 기타 각전은 명색이 대단히 번잡하므로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 설사 무분전이라 할지라도 그 취급상품이 자주 쓰지 않는 물건으로 유분각전에 없는 물품에 관하여는 平市署에서 육의전으로 하여금 質納케 하고 그 가격의 差損額을 무분각전에 분배 添價하게 하였다.²³⁾

^{22)《}萬機要覽》財用編 5, 各廛.

^{23)《}六典條例》漢城府 市廛.

육의전이라 함은 이 유분각전 중 가장 큰 여섯 개의 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만기요람》에 기재된 당시의 육의전은 다음과 같다.

- ① 선전(縮廛 또는 立廛:10분역(상품-필단)
- ② 면포전(銀木廛 또는 백목전):9분역(상품-면포・은자 등)
- ③ 면주전(羽細廛): 8분역(상품-각종 명주)
- ④ 지전: 7분역(상품-종이와 그 가공품)
- (5) 저포전·포전: 계11분역(상품-모시·베)
- ⑥ 내외어물전: 계9분역(상품-각종 어물 등)

그러나 육의전은 시전 중 최대 應分廛인 시전 여섯 개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그 구성전은 변화되어, 때로는 그 수효를 늘려「八矣 廛」이라고도 칭하였다.²⁴⁾ 육의전은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 전의 특정수를 뜻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전 중 최대의 국역을 부담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정 부 필수품의 조달상 필요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 대가로 상업상의 특전을 부 여한 것으로서 다른 시전과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은 아니었다.

상기한 순조시대의 《만기요람》이외에도 고종 때 나온 《靑丘示掌》에는 ① 선전 ② 면포전 ③ 면주전 ④ 내어물전 ⑤ 지전 ⑥ 저포전으로 되어 있고, 고종 때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市糴考에는 ① 선전(속칭 입전) ② 면포전(혹칭은목전) ③ 면주전 ④ 내어물전·청포전(모자 판매) ⑤ 지전 ⑥ 저포전으로 되어 있으며, 고종시대의 《六典條例》시전조에는 ① 입전 ② 면주전 ③ 백목전 ④ 저포전 ⑤ 지전 ⑥ 포전 ⑦ 내어물전 ⑧ 외어물전 등으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조 15년 蔡濟恭의 상소에 의하면 한성 시내에 할 일 없이 노는 무리들이 廛號를 자의로 만들어 일용의 물화를 매점하기 때문에 물품이 귀하여 물가가 5배나 앙등하였음을 두려워하여, 신설 전호를 모두 혁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²⁵⁾ 정조 18년에는 좌의정 金履素가 내어물전·청포전을 육의전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포전을 포함시킨 바 있고.²⁶⁾ 순조 원년에는 내

^{24)《}增補文獻備考》 권 166, 市糴考, 糶糴.

^{25)《}萬機要覽》財用編 5. 各廛.

²⁶⁾ 위와 같음.

어물전을 육의전에 다시 포함시켜 외어물전과 합하여 하나로 삼고 포전은 저포전과 합하여 육의전의 1전으로 등장케 한 일도 있었다.²⁷⁾

이와 같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동하는 육의전 중에서도 그 자격을 계속 유지했던 상전은 선전·면주전·지전 등에 불과하였다. 이 외에 국역의 9분역을 부담하던 면포전은 은자(銀子)를 함께 판매함으로써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저포전 역시 6분역을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육의전의 1전을 차지할 수 없었기에 5분역 부담인 포전과 합함으로써 1전을 차지할 수 있었다. 또한 내어물전도 외어물전과 더불어 모자를 판매하는 청포전과 합함으로써 육의전의 특권을 유지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 이러한 국역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대동법 실시논의가 일어난 선조 말에서 인조에 걸친 시기가 아닌가 추측된다. 대동법이란 종전의 토공, 즉 각 지역 생산품의 공납과 民有의 직접 정발이라는 형식을 폐지하고, 지세로 집약하여 일정한 미곡만(대개는전 1결에 쌀 12되) 징수하게 한 것으로, 재정에서 화폐가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종 잡다한 사용가치와 구체적 노동을 필요에 따라 직접 징수하던 것을, 다양해진 정부 용도에 따른 제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일종의국가재정 시행법으로 만든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동법시행 이후부터는관부의 수요품 중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경향 각지에서 「貢主人」을 지정하여 물품 구입의 청부를 맡게 하고, 그 대금을 大同收米로 지불하였던 것이다.

이 때 상업의 실정을 보면 임진란 당시 서울에서 피난한 상인들이 그 동안 각기 피난처에서 상업적 근거를 잡아 난이 끝난 후에도 상경하지 않았기때문에 서울이 '市肆空虛'하게 되어 정부의 수요 물품공급에 지장이 많았다. 이에 선조 33년에는 각 지의 수령으로 하여 지방에 흩어져 있는 京商들을 찾아내어 舊業에 돌아가라는 강제책을 쓰는 한편, 서울에서 平市署로 하여금시전에 대해 '東定市役'하게 되었다.²⁸⁾

市役이 각전의 경제적 실력에 따라 定律을 갖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알

²⁷⁾ 위와 같음.

^{28)《}增補文獻備考》 권 166, 市糴考, 糶糴.

수 없으나 대동법의 정률과세원칙과 또 그 당시 관부의 수요를 위한 공인의 발생을 상기할 때 막연하나마 상전에 대한 정률의 국역 부과도 같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특히 육의전의 발생 시기는 중국에 보내는 방물과 세폐를 분담케 한 인조 15년(1637)부터라고 할 것이다. 방물·세폐로 상공된 물품은 각종 직물과 어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육의전의 상품도 역시 직물과 어물이 그 주요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육의전 상품의 대부문이 방물·세폐로서 징발되게 되었으며, 육의전에 금난전권까지 부여하게 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고하겠다.

국역부담면만이 아니라 육의전 금난전권은 이미 인조·효종 양대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유분각전」과 그 중 가장 실력있는 「육의전」의 형성은 인조 15년 무렵으로 짐작된다.

육의전과 명칭에서 '六'의 뜻은 상술한 바와 같고 '矣'의 뜻은 국가에 납부하는 국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矣'자를 '주비'라고訓讀하고, 다시 '官物斂散時統首謂之矣'라고 하였다.²⁹⁾ 즉 관물을 斂散하는首吏가 장부상에「△」표를 가하므로 矣라 칭하던 것을 다시 矣자로 轉한 것이라고 하며,³⁰⁾ 또 矣를 속칭 주비라 훈하여 육의전을 六注比廛이라고도 쓰는데, 그 원뜻은 곧 部의 훈 주비라고도 한다.³¹⁾ 따라서 육의전을 육주비전·육부전·육분전·六調備廛 등으로 속칭하는 까닭도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육의전을 또는 六主夫廛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상으로 보아 주부는 길다를 뜻한다고 하는 일설이 있으니,32) 육의전은 육=주부=장으로 六長廛이 되며, 서울 시전을 건조할 당시에 종로 기타 간선도로에 長屋類의 건물을 조성하여 제공하였던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한다.

^{29)《}吏讀便覽》.

^{30)《}萬機要覽》財用編 5. 各廛.

³¹⁾ 梁柱東, 《古歌研究》(一潮閣, 1965), 740\.

³²⁾ 李丙燾는《三國史記》권 35, 地理 2에서 고구려 長堤郡을 主夫吐郡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주부를 장의 뜻으로 보았다.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육의전이 시대 변천에 따라 일반 시전과 마찬가지로 번창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했으므로 그 취급 상품이나 交局의 部數를 정확하게 드러내기는 곤란하다. 다만〈漢陽歌〉의 내용으로써 그 대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양가〉에 의하면 6의전은 광통교를 지나서 시작되며, 각 전의 市井들과 고객을 안내하는 「열림군」들은 큰 장옷에 갓을 쓰고, 소창옷에 한삼을 단 의 복을 입고 사람을 불러 홍정을 하였다고 한다. 또 그 상품에 관해서도 아래 와 같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① 면포전: 당진목·해남목·고양목(고양나이)·강나이(목면, 한강변에서 방직한 것)·상고목·군포목·공물목·무녀포·천은(순은)·정은(품질이 낮은 은)·서양목·서양주 등
- ② 지전: 백지·장지·대호지·설화지·죽청지·상화지·화문지·초도지·상 소지·부당지·궁저지·시축지·능화지 등
- ③ 포전: 농포·세포·중산포·함홍오승포·안동포·계추리(경북산 마포의 일종, 황저포라고도함)·해남포·왜포·당포·생계추리·문포·조포·영춘포·길주명포 등
- ④ 청포전: 주로 중국산 화물, 중침·세침·다홍삼승·청삼승·녹전·홍전· 분홍전·삼승고약·공단고약·감토모자(방한용 모자)·회회포·민강사당·오화 당·연환당·옥춘당 등
- ⑤ 선전: 육의전의 首廛으로 富商大賈인 시정들의 호사가 극진하였다. 공단·대단·사단·궁초·생초·설한초·운문대단·일광단·가계추·용문갑사·상사단·통해주·장원주·포도대단·조개비단·금선단·설사 및 뱃사·호로단·만수단·우단·광월사·아롱단·팔양주·쌍문초·흑저사·남추라·자지상직·거문궁초 등
- ⑥ 어물전: 북어·관목·꼴뚜기·민어·석어·통대구·광어·문어·가오리· 전복·해삼·가자미·곤포·미역·다시마·파래·우뭇가사리.
- 이 가운데 線廛(縇廛)같은 것은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나 영업 품목이 많은 점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만큼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특히 연경·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외국물품이 진열 판매되었다.

육의전의 상품은 대략 이러하며 그 밖의 몇몇 시전의 상품으로서 〈한양

가〉에 기재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刀子廛: 용잠·봉잠·서복잠·간화잠·금구호박·순금지환·산호지환·옥 장도 등
- ② 병풍전: 선약도·강남 금릉의 경직도·소상괄경도·해학파도·십장생도 등 각색 회화
- ③ 약전: 인삼·사삼·현삼·황연·황금·황백·우황·사황·구황·웅담·사 담·우모고·우황고·오독고·기타 약품

다음에는 육의전의 외형으로서 그 물적 설비인 건축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전 건축구조에 관한 견해는 일치하지 않으나 서기 1890년 경에는 2층목조 기와집으로서 상층은 창고로 사용하였고, 하층은 전포로 사용하였다고한다.33) 이러한 건축구조는 옛날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시전 건축 초기에는 2층건축이라는 기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종로의 잔존 건물이 1890년 경에 건축된 것이라고 하면 별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건축조사보고》에서는「常民의 가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 경성 대로에 임한 시전과 같은 것은 거의 모두 기와집으로서 다소 굴곡있는 옥개를 支承하여 그 扉는 厚板으로써 만들고, 이면에서 수개소의 橫棧을 치고, 외면에서는 丸頭鋲을 간추려 쳐서 장식으로도 삼았다. 店은 일반적으로 상판을 깔고 천정은 中天도 하지 않았다. 점의 후면은 가족의 住屋으로서 대소의 차는 있더라도 모두 온돌방으로 하고 중앙에는 中庭을 만들어 그것을 둘러 싸고矩形・凹字形・口字形으로 방・창고・낭하・庖廚 등을 배열함을 상례로 하며, 일상 가족의 起臥하는 곳은 반드시 상하에 온돌을 마련한다. 그 밖의 부분은 腰壁의 두터운 煉瓦로써 쌓고, 그 위에 작은 창을 만들며, 扉는 대개 片開 또는 양개로 하였다. 또 뜰에 면하는 곳은 床에서 1척 가량 높은 데에 창을 열고, 여기서부터 출입한다. 일반적으로 주실은 좁고, 천정 또한 얕으며, 창문도 극소하므로 난방을 위해서는 편하지만 광선이 들어오기는 불충분하여 음울함을 면치 못한다.

또 러시아 대장성에서 간행한 《한국지》에서는 「내지의 상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각 상회의 특종의 勤工場을 소유하되 통례 같은 건물 중에 설치한다. 이러한

³³⁾ 黑正巖,《經濟史論攷》(岩波書店, 1923), 19쪽.

근공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산의 書寫紙·면제품·絹布·신발·공작 펜·부채·虎髭 및 자수품 등이다.… 보통 점포는 藁葦 건물로서 이것을 전후 2 부로 구분하여 시가쪽 부분에 상점을 진열하고 후부는 가족의 처소로 사용했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각 都家에는 각 전 취급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부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양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都家事例》가 기록한 입전 전포 구조의 기술은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즉 입전의 구조는 1방부터 7방으로 구분되며 각 방의 면적은 10칸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10등분하여 영업에 종사하였으니 입전의 都員 수는 70인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입전에는 전포 뒤에 도가(Guild Hall)를 설치하여 廛務에 관한 회의 및 공사 처리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뒤에 상술한 都中의 각 역원은 이 곳에서 전의 업무를 집행하였는데, 《도가사례》에 의하면 시전의 도가 건평이 65평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전의 도가 면적도 대체로 그와 흡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건물의 단속을 위해서 看手人(主人)을 두고, 만약에 물건 서류를 분실당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微棒케 하고, 재화가 훼손되면 즉시로 보수케 하며, 명령을 거역하면 즉시 출가시키는 동시에 盟文으로써 시행 처결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가를 사적으로 소유했다고 하여임의로 개폐할 수도 없었다.

이 도가의 창시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 초기의 시전건설기에 "각전의 정부에 대한 부담이 춘추 2기에만 저화 각 20장씩의 사용세를 내는 것뿐이었다"34)는 사실로써 추측하건대, 이 때엔 도가와 같은 것이 물론 없었던 듯하다. 그 뒤 여러 국역 부담이 생기고 육의전의 길드조직이 발생되어 전의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일종의 「길드 홀(Guild Hall)」등을 필요로 하였다고볼 수 있다. 길드란 중세의 동업조합으로 원래는 종교적·정치적·사교적인의미에서 조직되었으나 조합원간에 상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열이 생겨상인길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도시의 상공업자 상호간에 일정한 규율에 의해 부정한 생산경쟁과 판매를 억제하였으며 전체의 조화를 이룩하면서각기 상공업자를 대표하기도 하였다.

^{34)《}經國大典》 권 2, 戶典 雜稅.

유럽 사회의 길드 클럽(Guild Hall) 등도 길드단체의 특허 창립보다는 훨씬 뒤에 건축되었다. 또 중국의 상인 집회소인 회관의 기원을 살펴보더라도 각종 회관의 역혁이 200년 전에 알려진 것이 없다.35) 당나라 때부터 상인회가존재하였고, 명초(1368)에는 북경에 강서회가 창설되었다고 하나,36) 芝罘의복건회관・漢口의 영남회관 등의 건조는 각각 18세기 초・중엽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37) 역시 길드 단체의 창립과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로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도가가 반드시 공랑 건축과같은 시기에 건축된 것은 아니고 육의전의 길드인 도중조직이 완비된 후의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육의전의 조직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도시상단으로서의 서울 육의전은 조선 궁실 및 산하 관청의 물품 수요에 대한 공급기관으로서 유일한 어용상인의 단체 인 동시에 상품 독점에 관한 전매권을 가진 상전의 총칭이었던 것이다. 그러 나 6전이 합하여 단일한 경제단위를 구성하였던 것이 아니라, 각 전은 각기 별개의 구성형태를 가졌다. 각 전은 都中이란 조합을 구성하여 정부에 대한 각종 부담을 총괄하고, 각 전의 상품 판매권을 독점하며, 都員 상호간의 친 목을 도모하며, '保家之道'를 힘써 '敬長慈幼之風'을 배양함으로써 自家의 실 력을 축적하였던 것이다.

각 전의 조직형태에 관한 개별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철종 12 년(1861)에 시행되었던 〈立廛議文書〉를 중심으로 하고, 역시 동시대에 시행된 〈布廛廛案〉 및 그 밖의 몇 개 자료를 참고삼아 입전 및 포전의 길드적 조 직을 해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입전은 그 자본에서나 각종 賦納에 있어서 나 단연 육의전을 대표할 만한 首廛的 지위를 차지하였고, 포전 또한 이에 비할 만한 큰 상전으로 그 내부 조직에 있어서도 다른 시전의 모범이 되었

³⁵⁾ O. D. J. MacGowan, 《Chinese Guilds》.

³⁶⁾ Morse, 《The Guilds of China》, 42쪽.

³⁷⁾ 根岸佶, 《支那 길드의 硏究》, 41쪽.

을 것이므로, 이상의 두 전으로써 6전의 전체 구조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都中 구성의 제일 요소라고 할 것은 도원의 가입 자격이다. 이에 관하여는 특이한 규칙을 세워 엄격히 그 자격을 심사하여 견고한 협동 정신을 발휘하며 동지적 결합을 감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만을 가입시켰다. 따라서 각 전마다 가장 연고가 밀접한 자, 예를 들면 도원의 아들이나 사위 등을 우선적으로 가입시켰으며, 전연 연고없는 타인에 대해서는 도원의 총회에 회부하여 엄격한 전형을 거쳐 그 가부를 결정하였다. 더욱이 무연고의 신입희망자에 대해서 50세 이상은 비록 백금을 납입할지라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으며, 24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도중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만 비로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총회의 가결이 없이 사사로이 금품을 봉납하고 차입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로 가입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그 조직의 견고함을 보여 주는 한 사례이다.

또한 도중의 가입에는 禮銀이라는 기본 가입금, 面黑禮銀38)이라 하는 가입 축하 향연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부의 접대를 요할 때 大事에는 大牌禮銀, 소사에는 소패예은을 각각 납입하여야 하였다. 그 납입액의 차이는 바로 도원 자격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지극히 귀중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다음 〈표 4〉의 납입액표는 철종 12년 경의 《立廛儀範》39)에 의한 것이다.

³⁸⁾ 面黑禮銀은 일명 知面禮라고도 한다. 成俔의《傭齋叢話》三館風俗條에 의하면 "우리의 옛 풍습에 과거에 등과한 자를 新來라고 하는데 그 신래자를 선배들 이 호출하여 먹으로 얼굴에 흑칠을 하여 索縛冠하는 등 종종의 악희를 하였으니, 이것을 黑新來라고 한다. 입전 新參者에 대해서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신참자 判新來人에 대한 악희를 面黑禮라 명칭하였으니 그러한 악희를 면하기 위한 예를 면흑예은이라 하였다"고 한다.

^{39)《}立廛儀範》은 철종 12년 6월에 제작된 것으로 그 편목을 보면 禮案各項‧罰案致誠案‧行禮案‧饌物式各項‧食價磨鍊‧南草式‧國恤闕下侍會‧勅使例給各項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各處元禮給‧各處單子‧各所銀傳掌目‧冊傳掌目網絹織週月限‧目活例次 등의 각 항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대부분 유실되었다. 여기에 인용한 것은 그 殘存 부분 중 禮案各項에 의한 것이다.

〈표 4〉 〈立廛禮案〉에 의한 各出市者別 부담금

출시(도중가입)자별	예은	면흑예은	소패예은	대패예은	비고
時先生(현도원)의 아들·사 위	3냥		1냥	10냥	
舊先生(사망한 도원)의 아 들・사위	6냥		"	"	未入丈則 결혼 후 6냥
舊先生의 아들(아동)	3냥		"	"	구선생 선화(사망) 3년 안에 分捧
시・구선생 진손	20냥	20냥	"	"	
" 외손・진증손	25냥	25냥	"	"	
" 외증손·진손서	30냥	30냥	"	"	
" 외손서·진증손서	30냥	30냥	"	"	
〃 진손 아동	20냥	20냥	"	"	
〃 진증손・외손(아동)	25냥	25냥	"	"	
〃 외증손(아동)	30냥	30냥	"	"	
판신래인(24세 미만의 연고 없는 타인)	50냥	향연에 따라 금액이 일정 치 않다	"	"	
판신래인(상첩이 있는 자)	40냥		"	"	

기타 옛날 도원이었던 사람이 재가입하거나 도원의 혈족으로서 다른 업종 에 종사하다가 가입하는 자의 경우 그 납입금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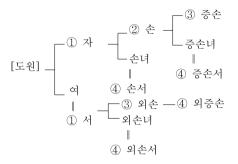
구 도원의 재가입예은 10냥
도원 아들·사위의 전입 ······예은 10냥
구 도원 아들·사위의 전입·····예은 20냥
도원의 손·외손·증손·외증손의 전입 ············예은 30닝

위의 〈표 4〉에서 가입금의 과다를 가지고 도원 자격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시ㆍ구선생의 아들ㆍ사위, 시ㆍ구선생 사망도원의 아동
- ② 시ㆍ구선생의 진손, 시ㆍ구선생의 진손 아동
- ③ 시ㆍ구선생의 외손과 진증손, 시ㆍ구선생의 외손과 진증손 아동
- ④ 시·구선생의 외증손과 진손서, 시·구선생의 외손서와 진증손서, 시·구 선생의 외증손 아동

- ⑤ 상첩이 있는 판신래인 무연고자
- ⑥ 24세 미만의 판신래인

위의 도원자격 순서에서 판신래인을 제외하고 이것을 다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도중의 가입은 혈연관계가 기본이 되어 있고 최대한 도원의 증손대까지 세습적인 가입의 자격이 있다. 따라서 육의전이 가진 동업 길드적인 강인한 단결력은 특히 혈연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남계만이 아니라 여계도 중요시되고 있다. 아들과 사위는 동일하게 대우하고 외손계는 진손계에 비해서 약간의 차등은 있으나 역시 경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아동출시의 문제이다. 종래 육의전은 판신래인을 제외하고는 모두혈연이라는 견해가 있어 "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격을 아들 또는 사위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40)라고 하였으나, 위의 도표에서 볼 때 아들·사위와 아동, 진손과 진손 아동, 외손·진증손과 외손·진증손 아동, 외증손과 외증손 아동이라고 병기된 것을 보아 아동출시란 아들이나 사위 기타 혈연자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혈연자가 아동시절에는 상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廛에 나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혈연자가 아동시절부터 전에서 종사하다가 독립하여 자신의 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동 아닌 아들·사위 등의 기술과 구별

^{40) 《}立廛儀範》 禮案에 의하면 賞帖所持者에 대한 特典은 순조 32년 3월부터의 일이라고 한다.

하여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아동」이란 혈연자가 아닌 아동이 독립의 廛號를 가지는 경우, 외국의 도제(Apprentice)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진손 아동은 아들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외손 아동은 사위가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진증손 아동은 孫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던 도제, 외증손 아동은 外孫이 그 아들처럼 사역하는 도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혈연자는 자・서・손・외손・중손・외증손・손서・외손서・중손서가지 가입 자격을 주면서 아동의 경우는 자・손・외손・증손・외증손으로서 그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할 것이다.

또한 비록 중시하는 都中이라 하더라도 전혀 연고없이 다액의 납입금으로써 가입할 수 있는 판신래인이 허용되는 것을 보면, 연고자는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사역되고 양육되어 온 도제의 가입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상전에서 봉사하다가 성장후에주인의 자산 일부를 얻는다든가 하여 독립 경영을 하는 관례는 현재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아동출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따른다면 비혈연의 도제인 아동이 혈연자와 거의 동격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주목합만한 사실이다.

넷째, 판신래인은 기술한 바와 같이 50세 이상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50세 이하로서 가입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최대의 부담을 지우고 특히 신입 자축 향연비인 면흑예은은 더욱 심하여 전에 공로가 있어 상첩을 받은 자가 아니면 大房都員 전원과 50세 이상의 廛員 모두가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立廛 都中의 가입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혼례에는 15냥, 상제례에는 25냥을 도원이 각각 부담하는 것과 같이 도원간의 엄격한 상호부조를 규정한다든지, 또 가입자격이 없는 자를 許參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矣任을 '其人子施行'41) 하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한 것 같

^{41) 《}立廛完議文書》 立議에는 '其人施行'이니 '衆人子施行'이니 '盟文施行'이니 하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古文에 나타나는 맹서 내지 罵詬의 습속을 따라 일 종의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은 것은 이 육의전 길드의 특징이었다.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육의전의 각 전 도중을 운영하는 역원의 명칭과 수효도 역시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입전을 예로 들어보면〈立廛立議〉에나타난 역원으로 上公員에 대행수·도령위·수령위·부령위·차지령위·별임령위,下公員에 실임·의임·서기·서사 등이 있었다.

大行首는 1전의 대표자로서 도중의 사무를 총리하는 직책이며, 都令位 이하 각 영위는 평의원회와 같은 기능을 가졌다. 이들은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며, 實任·矣任 이하 하공원은 장부정리 등 도중의 실무를 담당하며 임명제에 의하였다. 각 임원의 임기는 대체로 춘추 2기로 되어 있고, 모두 일종의 명예직인 까닭에 재직 중 특별한 복장인 도포를 입었다. 보수는 많지 않았으며, 다만 別任領位(70세 이상의 영위)와 실임 이하 실무의 역임에는 七十領座例42)에 따라 1기 종료시에 10냥을 지불하였다.

이들 대행수 및 각 영위의 선거는 먼저 도령위가 지명한 후보자 명단(3명이 상례)을 도원에게 회람시켜 적임자로 생각되는 자의 성명 밑에 날인케 하고, 그 날인수의 최고 득점자를 임명하였다. 선거시에 사적으로 순회하여 자기에게 날인할 것을 권유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각 영위 자리를 소망하는 등자기의 당선 운동을 하는 자나 득점을 기만한 자 등에 대하여는 '罰三盆'(15냥)의 처벌을 하였다.

각 임원 가운데 대행수와 도령위는 그 직책이 중대한 것으로서 여러 특례가 있었는데 대행수는 각 전의 기강의 振顏, 재화의 취산 등이 오직 그 능력여하에 달린 만큼 도원의 진퇴를 호령하며 상벌을 행하는 실권을 가졌다. 그선거에서도 도령위가 집행하는 座中(領位) 50명 중에서 10명 이상의 찬성을얻은 최고 득점자를 당선케 하였다. 또 중임이기 때문에 10개월 이상은 재임치 못하였으니, 대행수가 먼저 좌중 도원에 대하여 한 번 무릎을 꿇고 절하

^{42) 《}立廛完議》에 의하면 "人間七十古來稀 亦世可無優老之典 七十歲領座段 行罰 外大小宴會 則備物衷送爲齊"라 하여 70세 이상의 領座를 우대하게 되어 있으 며 實任이하 苦役을 맡은 임원은 이 古老 예우의 例를 준용하였다.

면 軍中(都員 전체를 말함)은 두 번 무릎을 꿇되 그 때에 '儼座不起者'나 '不致 敬者'는 '罰三盆'(5냥)에 처하는 엄한 규칙이 있었다.

도령위는 기왕에 1廳(1廛과 같은 뜻임)의 班首인 대행수였던 자로서 연륜과 덕망을 겸한 인물을 선임하였다. 임기는 종신이며, 도중의 역원 추천의 권한과 각종의 제사(南廟祭·普靜佛祭·山神祭)43)를 주관하며, 도중의 고문역이므로 최대의 존대를 받았다. 따라서 연회나 行罰같은 때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일이 끝난 후에는 도령위의 자택으로 備物을 보내주었다.

도원의 승차는 일반도원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첩을 주고, 이러한 수상자에 한하여 승차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입전의범》 승차조에서 보면 일반 부원에서 승차할 수 있는 위계로는 時行首, 十座, 五座 같은 것이 있었다. 이들이 위에서 말한 상공원·하공원과 같은 직책을 가진 것인지 또는 도원의 계급을 가리키는 위계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이러한 승차에는 반드시 예은을 봉납하였다. 그 봉납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44)

〈표 5〉 도원의 승차에 따른 예은

승차한 위계	예 은	면 흑 예 은	도가비량금
시 행 수	8냥	2냥	2냥
십 좌	4냥	3냥	3냥
오 좌	8냥	2냥	2냥

여기에서 都家備量金은 도가의 상비금으로서 승차자에게 갹출하여 비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승차자는 領位禮銀이라 하여 도중의 최고위인 대행수와 도령위에게 각각 3냥, 5냥을 봉납하였고, 또 승차자들은 간단한 향연을 위하여 수시로 2·3냥 정도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공원 · 하공원 이외에 삼소임 · 서역 · 수임선생 · 연중수령 · 좌객조사 · 소

⁴³⁾ 육의전의 중요한 연중행사의 하나이며 자체의 발전을 위한 치부책으로서 매년 가을 10월 제사를 지냈는데, 서울 남대문 밖 관우묘(남묘, 재신묘)에 각 전 상민이 제사를 지냈고, 종래 보신각 옆에 있는 소묘에 신상을 봉하여 재신으로 삼고 시전진수를 위하여 고사한 것과 그 밖의 산신을 지내는 천신제 등이 있었다.

^{44)《}立廛儀範》陞差.

임선생·유사·사환·회계 등이 〈입전조례〉에 보이고 있으나, 그 지위와 사무적 한계에 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육의전의 성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주상인의 길드적 단체인 서울 육의전은 조선 봉건국가의 철저한 보호와 육성을 전제로, 상인으로 하여금 관부의 용도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였다.

그 국역부담의 실제를 약술하면, 관부는 경시서를 통하여 육의전으로 하여 금 상납시킬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 전의 도가에 하명하면 도가는 각 전의 부담 능력에 따라 유분각전의 비율을 정하고 그 分賦를 총괄하여 상납하였던 것이다.(45)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정률의 액수를 상납케 하였으므로, 도가는 미리 각 전에서 물품을 징수·보관하였다가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납품하는 제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서울의 각종 시전은 그 擔稅의 비중으로 보아 다음과 같다.

첫째, 육의전에서 취급하는 詞品, 곧 외국상품 또는 都民의 수요가 많은 상품에 대한 세율이 최고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일반 유분각전에서 취급하는 값비싼 상품에 대한 것이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셋째, 무분각전의 상품은 일정 세율에서 누락되었고, 수시로 부담케 하는 의무만 갖게 한 것으로, 이것은 '1/10' 내지 '無分'으로 담세등급을 달리하는 것이며 또한 각 전의 상업자본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육의전을 비롯한 유분각전이 국가에 봉납하는 정기적인 공물공안에 기록되어 있는 元貢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폐와 방물이었다. 이같은 원공 이외에 관부가 물품을 구입하는 別質를 비롯하여 각종의 公質는 구입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른바「折錢」의 제도로서 실제 값의 몇 분의 1을 보상하는 것

^{45) 《}萬機要覽》財用編 3, 戶曹貢物別貿條에 "元貢之外 別貿者 謂之無元貢別貿 元 貢之不足 而別貢者 謂之有元貢別貿"라 하고 이 特別貿入의 가격은 호조에서 정하였던 것이니 영조 26년에 호조판서 朴文秀의 제안으로 시행되었다.

에 불과하였으니, 이에 관하여 차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세 폐

세폐가 형식화되어 상전이 관부에게 공물을 봉납한 것은 인조 15년 戶曹에 歲幣色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한다. 그 뒤 세폐의 종목은 수시로 가감되어 14종으로 한정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육의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각색 면포(무명)・면주(명주)・저포(모시)・세마포(삼베) 등으로서, 《만기요람》財用編 歲幣條에 의하면 그 변천은 다음과 같다.

각색 細綿布

。元 定 數			10,000필
談 數 ① 인조 21년(1643) ② 인조 23년(1645) ③ 인조 25년(1647) ④ 효종 2년(1651) ⑤ 숙종 19년(1693) ⑥ 경종 3년(1723)			200필 2,700필 2,100필 600필 600필 800필
月 1 2 5 6 6 6 6 6 7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4. 1 - 0.000	ವ) \	7,000필
。時存歲幣數(白上木 1,000	1号・生上木 2,000	펄)	3,000필
	각색 綿紅	d	
。원 정 수 • 감 수			2,000필
① 인조 21년(1643) ② 인조 23년(1645) ③ 인조 25년(1647) ④ 효종 2년(1651)	紅紬 50꾈 100꾈 — —	綠紬 50꾈 100필 — —	白紬 500필 500필 200필 100권
계	150필	150필	1,300필
시존세폐수계	100필	100필	200필 400필
/7			400 달

없음

각색 저포

· 정 수 필	200필
· 시존세폐필(백저포)	200필
각색 세마포	
∘ 원 정 수	400필
• 감 수	
① 인조 21년(1643)	300필
② 인조 23년(1645)	100필
	400필

이상과 같이 세폐는 그 종목으로 보아 육의전 가우데에서도 면주전 • 면포 전 · 저포전 등이 담당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형식적인 대가를 지불하였다.

첫재, 백상목과 생상목은 면포전에서 담당하고 생상목 중 2동 25필은 선혜 청에 납품하였다. 호조에서는 그 대가로 백상목·생상목 1필마다 쌀 2석씩을 지급하였다.

둘째, 각색 면주는 면주전에서 전담하여 호조로부터 그 대가로 1필마다 대 동목 9필을 지급받았다.

셋째, 각색 저포는 저포전에서 전적으로 납품하고 그 대가로 1필마다 대동 목 8필 3척 5촌을 호조로부터 받았다.

넷째, 각색 세마포는 역시 저포전에서 400필씩을 바쳤던 것이 점차로 감소 되어 인조 22년에는 전액이 면제되었다.

(2) 방 물

시존세폐수

유분각전이 봉납한 공물 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물이었다. 즉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이 휴대할 조선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방물을 각 전에서 현물로 징발한 것으로는 冬至·正朝·聖節의 三節使行의 年例方物과 사은·奏請· 심양행문안・進香・進慰・進賀・進奏 등의 別使方物이 있었다. 이 역시 인조 15년에 시작된 이후 수시로 가갂되어 15종의 품목으로 되었다. 그 방물 중에

〈丑 6〉

年 例 方 物

		황제전		;	황후전		ž	황태후전		}태후전		Ž	태자	전	합 계
	동지	정조	성절	동지	정조	성절	동지	정조	성절	동지	정조	성절	[법 세		
황세저포	*20필 보2	*20필 보2	10필 보2										50필 보6		
백세저포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15필 보2	15필 보2		210필 보22		
홍세저포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60필 보12		
황세면주	20필 보2	20필 보2	30필 보2										70필 보6		
백세면주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140필 보20		
자세면주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20필 보2				140필 보14		
백 면 지	1,300권 보13	1,300권 보13	1,400권 보14							500권 보5	500권 보5		5,000 보50		
합 계	80필 보8	80필 보8	100필 보10	60필 보60	60필 보8	60필 보8	60필 보8	60필 보8	60필 보8	25필 보4	25필 보4		650필 보80		
11 세	1,300권 보13	1,300권 보13	1,400권 보14							500권 보5	500권 보5		500권 보51		

(*표의 각 20필은 方物存減來歷項에 있는 필 수를 표시한 것이다)

서도 중국의 황제·황후·황태후·황태자에게 보내는 물품과 수량이 각각 상이하였다. 《만기요람》 방물조에 의하여 중국에 보내는 방물의 종류와 규모 를 사행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표 6〉·〈표 7〉과 같으며, 그것은 유분각 전 특히 육의전에서 전적으로 납품하였다.

이 표에서 '補'라 함은 방물물품의 부족함을 보충시키기 위하여 예비로 구비한 수량을 말하는데 만약에 부족함이 없어 보충용의 물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귀국 후에 정부에 바치게 하였으나 실제로 보충용의 물품을 정부에 갖다 바친 예는 드물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 방물로서 육의전이 부담한 물품의 양은 막대한 수량이었다. 〈표 6〉과〈표 7〉에 보이는 수량을 합하면 각색 저 포는 764필, 각색 세면포는 900필, 백면지는 17,170권이다.

그 밖의 방물로 각종 해산물도 있었는데, 육의전이 대개 직물·어물전이었 던 것도 여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別使方物

		황	저]	전					황	Š	<u>5</u>	전		
	사 은	주	청	황 ^저 심양 문인	행	진	향	사	은	주	청	황 심 문	행	진	향
황세저포	30 보)필 보2				제폐 K弊)								
백세저포	30필 보	30)필 보2				00필 보2		10필 보2		10필 보2	2	20필 보2		
홍세저포									10필 보2		10필 보2				
황세면주	20필 보	2 .)필 보2												
백세면주	30됨 보)필 보2			2	30필 보4		20필 보2		20필 보2				
자세면주	20필 보	2 .)필 보2									2	20필 보2		
백 지	3000년 보2)권 120				30권 보20)0권 보10
전 복)첩 보2							1	.0첩 보1		
팔 대 어 (문어)				20)미 보2							1	.5미 보1		
대 구 어				200) [[¤(10	Юп]		
, , , ,				년 200	년10)근							10	보5)0근		
해 삼				200	보6							10	보3)0근		
홍 합					보5							<u> </u>	12.8		
해 대					10)0근 보3		
광 어				200)미 보2							5	50미 보3		
		황 태	亨					Š	항 E	H .	자 전	<u>લ</u>			
	사 은	주 청	심	·제 양행 -안	진	향	사	은	주 :	청	황제 심양학 문안	행 진	향	합	계
황세저포															50필 보4
백세저포	10필 보2	10필 보2	:	20필 보2)필 보2	20 5	필 12				28	エ1 80필 보2
홍세저포	10필 보2	10필 보2							20 占	필 12					40필 보8
황세면주															40필 보4
백세면주	20필	20필							20	필				36	50필

	보2	보2				보2		보18
자세면주			20필 보2					80필 보8
백 지				1000권 보10	500권 보5	500권 보5		12,000권 보120
전 복			10첩 보1					40첩 보4
팔 대 어 (문어)			15미 보1					50미 보4
대 구 어			100미 보5					400미 보20
해 삼			100근 보3					400근 보20
홍 합			100근 보2.8					40근 보10.6
해 대			100근 보3					400근 보10
광 어			50미 보3					300미 유11

이와 같은 供上品에 대하여도 관부는 역시 형식적인 代價를 포·전으로 지불하였다. 그 가격은 《만기요람》 방물 각종공비조에 의하면 세면주·세저 포 1필에 下地木 8필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색 저포 대가 6,172 필, 각색 세면주 대가(하지목) 7,200필, 백면지 대가 쌀 12,019석(하지목 6,010필 에 해당), 각종 어물 대가는 2,095냥 6전이었다.

(3) 별무·공무

이상에서 말한 세폐·방물 등이 본래 약간의 대가를 지불받는다 하여도 사실상 공물이나 별차이가 없었음에 비하여, 별무는 元貢의 부족량을 관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요람》호조편 공물조에 의하면 별무에는 ① 各司有元貢別貿: 각 관서에서 원공의 수량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 ②各司無元貢別貿: 각 관서에서는 원공과는 별도로 특별 구입하는 것, ③各廛各契別貿: 유분각전과 각종의 공납계 등으로부터 특별히 물품을 구입하는 것 등의 3종이 있었다.

이 별무는 ① 정기적인 無鱗分等을 하는 것과 ② 필요에 다라 수시로 賢入하고 지급한 2종이 있었으니, 어린분등이란 각 상전에 따라 1년에 1회내지

⟨∄ 8⟩

각전 별무 일람표

			정조 2년(무술)		정조 9년(을사)		정조 22년(무오)		순조 7년(정묘)	
품		명	품목	價折錢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입		전	필단	10,600냥	左同	6,800냥	좌동	2,800냥	좌동	4,800냥
면	주	전	상주경 용면주 예단면주	6,275냥	좌동	1,194냥	좌동	1,194냥	좌동	2,028냥
초	玊	전	12승백저 포 8승백저포	1,586냥	황저포 12승백저 포	2,616냥	황저포, 8승 백저포,1 2승	3,729냥	좌동	3,862냥
지		전	감시락, 폭지	400냥	좌동	64냥	좌동	150냥	좌동	285냥
발	리	전	유철주철	3,241냥	좌동	1,293냥	좌동	1,210냥	좌동	2,394냥
상		전	모구피	381냥	좌동	244냥	좌동	180냥	좌동	233냥
창		전	각색우피 각색웅피	1,522냥	각색우피	454냥	좌동	479냥	좌동	1,265냥
생	치	전	치미우	104냥		120냥	좌동	84냥	좌동	112냥
양	대	전			세량대	71냥	좌동	51냥	청포전	82냥 132냥
0)-	이상합계		24,114냥			13,059냥		10,215냥		15,173냥
	합 계 (各 廛 各契折錢		113,639냥			66,657냥		46,998냥		67,300냥
都折錢(同年各所司別 年各所司別 貿總額)		3	356,374냥	:	208,080냥	:	212,084냥		212,084냥	

4회로 정기적인 공급의 의무를 가하는 것으로서 각기 공급 기한과 공급 물품 종류 및 수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그 별무의 실제를 보기로한다. 즉《만기요람》호조 공물조에 정조 연간의 별무액이 가장 많은 정조 2년, 가장 적은 정조 22년, 중간 정도인 정조 9년, 그리고 순조 7년의 각 별무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시하면 위의〈표 8〉과 같다.

이상에서 육의전에 포함되는 전은 입전·면주전·저포전·청포전 등이며 호조의 서울 각전에 대한 別貿都折錢의 6.7%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만기요람》에 의하여 호조 1년간의 捧入(세입)·用下(세출)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丑 9〉

호조 1년간의 捧入・用下

		捧 入	用下
		정조 9년(을사 : 中年)	정조 16년(임자 : 중년)
	米	127,620석	117,152석
田	米	4,037석	4,074석
	太	41,363석	43,827석
	銀	620냥	983냥
	錢	219,830냥	274,890냥
木	綿	1,440동 12필	1,279동 38필
麻	布	133동 7필	23동 27필

이 가운데에서도 錢의 경우 호조의 1년간 수지관계 및 별무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錢의 경우 호조의 1년간 수지관계 및 별무액

	호조 1년긴	別貿		額		
捧	入	用	下			识
정조 14년(상년)	409,997냥	정조 원년(상년)	374,860냥	정조 2년	(상년)	356,374냥
정조 9년(중년)	219,830냥	정조 16년(중년)	274,890냥	정조 9년	(중년)	208,080냥
정조 7년(하년)	209,959냥	정조 6년(하년)	182,299냥	정조 22년	(하년)	142,136냥
순조 7년	306,988냥	순조 7년	323,338냥	순조 '	7년	?

위의 〈표 10〉에서 호조 1년간의 경비중 錢의 세출·세입액이 별무액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별무가 반드시 육의전을 통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육의전 관계의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에 제시한 〈표 8〉의 각 전 별무일람표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官府 各署가 육의전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지만, 그 밖의 육의전에도 없는 상품의 경우는 육의전으로 하여금'廣求貿納'케 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을 특히「公貿」라 한다.

조선 말엽에 이르러서는 공무로 말미암아 물주가 그 물자를 마음대로 조 정하여 물가가 날로 급등하였던 반면에, 廛人이 관부로부터 받은 대가는 불 과 10분의 1, 2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조 15년 6월 공무제도를 혁과하고, 御藥材와 시급하고 구하기 어려운 물품에 한하여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만기요람》에 보이는 이 공무는 정부의 직접 구득뿐 아니라 양반층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던 것이니, 《대전회통》 戶曹 進獻條에 의하면 종친 및 동반 6품 이상·서반 4품 이상은 品布 각 백저포 1필을, 동반 7품 이하·서반 6품 이상·효中巫女(상·중·하·등)·경중 및 開城富居人으로 하여금 소정의 면주·저·마포를 바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역하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은 세폐·방물의 공납과 별무·공무의 買上 대가는 소위 折錢의 형식을 적용시켰던 것이니, 그 公平率은 조선 초기에 포·저화를 사용했을 때에는 정포 1필=상포 2필=저화 30장=米 4升이었고,46) 후기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하되 동전은 100=1냥(10냥=1관문)이었고, 은전 2냥=錢文 2냥이었다. 이 절전에서 정부매상이나 봉납의 대가로서 전을 지급받을 때에 그 가격이일반 시가에 비하여 어떠했으며, 또 매상(별무·공무)과 공납의 가격률이 어떠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였고 공납이 매상보다 더욱 저렴하였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조선 초기 이래로 상업상의 감독기관으로서 호조 산하에 경시서, 뒤의 평시서를 두어 시전의 검사, 도량형의 감독, 물가의 평균조절 등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한 것은 농본주의에 입각한 상업억악 정책의 좋은 표현이라 하겠다. 그 뒤 점차로 상인은 자본을 축적해 갔지만 국가재정이 궁핍해졌으므로 자연히 정부는 상인의 부에 의지하게 되고 상인은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게 되니 양자 사이에는 일종의 代償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상업보호라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하나가 바로 육의전 길드에 의한 특허적 전매 형태였던 것이다. 그

^{46) 《}經國大典》 권 2, 戶曹 國幣.

러나 그 특권이 강대하면 할수록 그 의무 또한 가중되었다. 육의전의 상품독점은 한편으로는 궁실, 정부관리들의 부정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신흥 기업자의 진출을 막았던 까닭으로 상공업은 한층 더 위축 침체하게 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위정자들은 상업을 공정한 생업이 아니라는 관념 아래 장려할 수 없는 것으로 천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의특수재정인 귀중물품 조달의 필요상 어느 정도 보호 육성할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감독은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되었던 것이며, 이 특허를 이용하여 관리들의 부정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상업 보호책에는 첫째 정부의 자금 대여가 있고47) 둘째로는 외부의 압력에서 시전을 보호하는 것 등이 있었으나⁴⁸⁾ 이보다도 정부의 상전 보호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난전이며 이것이 곧 육의전 최대의 특전이었다. 그 특전이 서구 길드의 특전과 유사한 것인지 아닌지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래 난전이라 함은 전안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판매를 허가받은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을 평시서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였던 것은 기술한 바이거니와, 난전을 자행하는 자는 시민의 고 발로써 적발 징계하되 그 압수한 물품이 소정의 벌금에 미달할 때는 杖刑까지도 가하였다. 그 밖에 궁가소속자를 위한 난전이 심한 경우에도 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그 물건은 몰수하라고 하였고 사대부가에서도 난전을 자행하

⁴⁷⁾ 순조 9년 12월 慶安宮 內帑錢 50,000냥과 내사전 20,000냥을 都下 十廛 十貢에 대여하여 불경기를 구제한 일이라든지, 순조 31년 11월 당시 帽子廛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까닭으로 關西錢 15,000냥을 10년 기한으로 대여한 일이라든지, 헌종 6년 11월 저포전·진사전·상전·입전 등이 화재로 소실됨에따라 앞의 각 전에 恤典을 급여한 일 등의 예가 있다.

⁴⁸⁾ 순조 33년 3월에 호위영군관 김선헌이 米廛에서 군량 9석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무뢰배를 끌어모아 시전을 불사르고 가산을 파손하였을 때(《純祖實錄》권 33, 순조 33년 3월 임오), 무인 洪眞吉·姜春得 등이 시전을 불태웠을 때에 각각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할 일 등이 있다. 또 헌종 원년 5월에는 사헌부 지평 조효준이 저포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자의로백저포 판매를 금하여 시전의 동요를 야기시킴에 따라 그 직을 파면한 일(《日省錄》헌종 을미년 5월 26일)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 禁吏를 구타하고 전인을 구류시켜 속전을 도로 뺏는 일이 있으면 그 가 장을 적발하여 의법 처단한다는 규정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난전의 금지는 조선 상업정책의 일부로서 관서로 하여금 이를 금지케 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부의 어용상인이자 최대의 국역부담자인 육의전으로 하여금 난전 금지에 관해 일종의 경찰권을 부여하여 관서와 협력케 하였던 것이니, 이것은 곧 육의전의 자위적인 행동인 동시에 관부의육의전에 대한 보호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금난전이 시작된 연대는 육의전 내지 유분각전의 성립 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육의전이 어느 때부터 이 금난전의 경찰권을 갖 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특권의 부여가 반드시 국역 부담의 代償 조건인 이상, 육의전에 대한 국역 부담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육의전과 같이 관허의 특권이 있는 것 이외에 이것을 모방 또는 악용하여 폭력배들이 난전금지를 사사로이 자행하는 현상도 있어 적지 않은 악폐를 남겼다. 예컨대 정조 15년 蔡濟恭의 상소에 의하면 폭력배들이 세민(細民)의 채소, 옹기파는 것까지 고발하고, 혹은 사람들이 물품을 시장으로 반입하는 것을 도중에서 협박하여 염가로 강제 구매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농민의 간단한 물물교환이나 심지어 병중에 있는 부모의 치료약을 구하려고 면포 등을 가지고 나와도 난전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당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력배 중에는 관부나 세가의 공사노비도 있었고,⁴⁹⁾ 군병인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처럼 권력을 가진 자에게 대해서는 그 단속이지극히 곤란했던 것이다.

그 예를 들면 선조 때에 훈련도감이 세워지자 그 군병으로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자가 市業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것을 묵인하였으며 나아가 그들에게는 일반 상인이 부담하는 市役을 전적으로 면제하였던 것이다.50) 그러나인조 이후 시전에 대한 국역이 규정되면서 이 국역을 분담하는 유분각전, 특

^{49) 《}英祖實錄》 권 3, 영조 12년 12월 병인.

^{50)《}增補文獻備考》 권 163, 市糶考.

히 육의전에 대하여도 제약이 없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효종 때에는 군병으로서 상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市牌라는 認證을 급여하고, 그 대신 5분의 1의 시역에 응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51) 그러나 그들의 작폐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結黨設肆의 경향까지 생겼다. 숙종 원년에는 훈련도감 군인과 精抄軍등의 난전의 폐단을 금한 바 있고, 숙종 49년에는 효종 때에 제정한 시패법을 폐지하기까지 이르렀다.52) 그러나 이와 같은 군병의 난전작폐는 실로 군사 재정의 무질서에서 온 것으로 영조 23년 11월 좌의정 趙顯命의 上箚文을보면, 군병의 난전을 금하지 않으면 廛民이 감당할 수 없고, 군병의 난전을금하면 군병이 자생할 길이 없다는 모순에 빠져 심지어 호위영의 폐지 논의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난전을 혁파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영부사 金在魯같은 사람은 호위군의 난전을 금지하지 말 것을 上함한 일조차 있었다.53) 이리하여 이 문제는 좀체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정조 5년 정월에도 각 군문에 난전을 엄칙케 하는 상교가 내려지기도 하였다.54)

이러한 가운데 금난전의 특권이 공납으로 허용된 민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육의전분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육의전 이외의 상전에도 이를 일시 허 용하고 또는 하려고 한 일도 있었다.55)

여기에서 부언할 것은 금난전의 특권을 가진 육의전으로서도 그 특권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난전금지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 은 관부의 소유로 하였는데, 경종 4년에 이르러 호조우윤 조영익의 상계로

⁵¹⁾ 위와 같음.

⁵²⁾ 위와 같음.

^{53) 《}英祖實錄》 권 80, 영조 29년 7월.

^{54) 《}正祖實錄》 권 11. 정조 5년 정월 을유・무자.

⁵⁵⁾ 정조 15년 채제공의 상소에 따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전에 설치한 老鋪를 조사·보고케 하여 이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려 하였으나 조사 결과 동년 2월까지 오직 3전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연한의 久近으로써 규정치 말고 육의전 외에는 일체 금난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일도 있었으며, 순조 7년에는 육의전 이외의 鉢里廛・樺皮廛・淸蜜廛・鞋廛 등에도 그 특권을 준 일이 있었으나 그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물가를 조종하고 도시경제의 폐단을 초래하였으므로 뒤에 다시 그 특권을 취소한 사실도 있었다(《日省錄》순조 7년 2월 25일·7월 29일).

인해 난전의 액수가 적으면 징치하지 말고 설령 많다 할지라도 관부에 속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논의가 일어나, 마침내 난전행위에 대하여만 처벌을 하고 그 물품을 관부에 속하게 하는 일은 금지하였다.

〈劉元東〉

2. 지방상업

1) 상무사 우사

조선 농촌의 상업경제는 주로 시장을 무대로 전개되었다. 즉 '시장을 중심 으로 한 지방경제가 곧 조선 경제조직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1) 재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경제 생활의 토대는 역시 농업생산에 있었 으며 그 잉여물로 자기가 필요한 물품과 교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후 기의 사실이지만 시장 또는 장이 전국에 약 1.000개소나 되며 《만기요람》에 의하면 순조 때에 경기 102개소, 경상도 276개소, 충청도 157개소, 강원도 68 개소, 황해도 82개소, 전라도 214개소, 평안도 134개소, 함경도 28개소였다고 한다. 보부상은 이 시장을 중심으로 행상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교환 경제를 매개하는 전문적인 시장상인이었다. 보부상은 대개 1일 왕복의 노정 을 표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망을 돌아다니면서 각지 물화를 유통시켰 다. 그러므로 동일한 경제지역 내에서 생산된 물화는 보부상에 의하여 그 곳 시장망에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래 조선시대의 향시(지방시장)는 「1개월 6장」으로, 한 지방에서 매월 6회씩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만기요 람》 재용편 향시조에 의하면, 1·6일, 2·7일, 3·8일, 4·9일, 5·10일의 순 서로 개시되었다 한다. 예컨대 1·6일이라 하면 초 1일에 개시한 곳은 항상 초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에 각각 개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절 에서 주로 논급하려 하는 충청남도 苧産八邑의 개시일을 예시하면 제1경로

¹⁾ 四方博,《朝鮮における近代資本主義の成立過程》(京城大法文學會, 1933), 138쪽.

는 한산읍내 시장(1일장)을 기점으로 하여 서천(2일장), 비인(3일장), 남포(4일장)의 순서로, 제2경로는 은산(1일장)에서 홍산(2일장), 정산(3일장)이나 또는 부여(3일장)를 거쳐, 임천(4일장)의 순서로 각각 행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²⁾이와 같이 일정한 시장 그룹을 형성하는 보부상이 동일구역 내를 순회행상하였다.

보부상은 褓商과 負商을 통칭한 명칭으로, 때로는 보상만을 말할 때도 보 부상이라 하고 부상만을 역시 보부상이라고 통칭하기도 하나 그것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상품에 관하여 보면 물론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겠지만 보상은 주로 정치하고 비교적 고가인 잡화, 즉「吳服, 毛物, 骨物, 혁대, 紐, 刀子, 銃, 櫛, 冠具」3)또는「주단, 포목, 유기, 烟竹, 금·은·동제품(주로 장신구), 관구, 笠子, 宕巾, 網巾, 竹梳, 필묵」4)등 잡화들이었다고 한다. 뒤에 상술할〈商務社章程〉(광무 3년 6월)이라는 사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右社(보상)의 판매물종에는 布·帛·錦·紙物·綾·紬物·苧·金·銀·銅·貂·蘕·棉花·皮革 등이 보인다. 이에 비하여 부상은 비교적 조잡한 일용품인 목기·연초·토기·어염·도자기·방망이·홍두개·草席·바가지·草鞋 등을 취급하였다 하며, 역시〈상무사장정〉左社(負商)의 판매물종에는 어염・藿・生水鐵・토기・木物・南草(담배)・麯・竹物・蘆席・淸蜜・靑麻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부상의 상품은 농업 생산을 주로 하는 사회에서 유치한 가내수공업품을 주로 하는 데 비하여 보상의 상품은 기술상으로 발달된 세공품이 위주이며 주로 사치품이 많았다.

다음으로 상행위 방법을 보면 보상은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시장 또는 촌가의 마루에서 보자기를 끌러 펴고 판매하였으므로, 속칭 봇짐장사라고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부상은 상품을 지게에 얹어 등에 걸머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였으므로 일명 등짐장사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의 대부상·대보상들은 수운과 陸駄로 다량의 상품을

^{2)《}增補文獻備考》 권 165, 市糴考 3.

³⁾ 四方博, 앞의 글.

⁴⁾ 柳子厚,《朝鮮褓負商考》(正音社, 1948), 20\.

일시에 운반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 보상과 부상이 각각 견고한 조직을 가진 상인조합이며 행상조합이란 것은 경제사가들에 의하여 규정된 바 있고5) 육의전과 더불어 조선상업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명하다. 필자는 1955년 3월 충남 지방을 답사한 결과 부여·정산(청양)·홍산·임천·한산·비인·남포·서천 등 苧(모시)를 생산하는 이른바「苧産八邑」을 순회하는 보부상단이 아직도 재래의 전통적 조직을 견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리하여 이 충남의 보상단(정확히 말하면 충남우도 저산 8구 商務社 右社)의 실태를 중심으로 하여 보부상의 문제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조사 당시 동사의 접장이었던 부여군 부여면 왕진리 거주 白萬基씨 소장의 문서 및 물품을 검토한 결과 거기에는 중앙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중한문헌이 보관되고 있으며 역대로 내려오는 《靑衿錄》과 印匱, 團旗 등을 한꺼번에 2중 3중으로 포장하여 신주처럼 목상에 올려 놓고 매월 1일, 15일에 제사지내고 있었다. 백만기씨 소장의 傳掌記의 관계문헌 및 물품은 다음과 같다.

A. 목록류 문건

청금록(역원명단)	21책
판하상리국절목	2책
혜상공국관문 등 서책	2책
완의	1책
상무사장정(홍산우지사)	1책
상무협회규칙	1책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	1책
한성부완문	1책
절목	1책
완문	1책
상고계립의	3책
상무장정부칙	2책
상규단취지서	1책
전장기(인계목록)	1책

⁵⁾ 朝鮮總督府、《朝鮮人の商業―調査資料 第11輯―》(1925).

B. 규약류 문건

충남상업회사장정	1책
충남상업주식합자회사규칙	1책

C. 기물

봉도기	1건
좌사봉표	1건
은홍비병남장무원구인	1개
은홍산공사원인	1개
유래구문기홍보	1건
은홍영위지인	1개
은홍산공사원구인	1개
홍산재무워구인	1개

(1) 조 직

가. 보부상 조직의 기원

우리 역사상 부상의 기원은 아마도 고대사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당시의 물품 운반수단으로 소와 말이 있었지만 주로 사람의 머리나 등에 의해 운반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충당되었었던 까닭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同濟相救'하는 미풍도 생격으니 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전설도보인다. "태조가 고려 말 함경도 만호로 있을 때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머리를 맞은채 적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 때 마침 황해도 토산군에 거주하던 백달원이란 자가 죽립을 쓰고 지게를 짊어지고 지나가다가 태조의 위기를 보고 태조를 지게에 담아 싣고 위기를 구하였기 때문에, 태조 즉위 후에 백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의 소원에 따라 소자본인 8도의 행상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각 주군에 任房을 설치케 하고 침식・질병의 치료・장례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설과 또는 "태조가 함경도의행상들을 이용하여 신왕조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8도에 하명하여 상민을 우대하기 위하여 상민 단체를 조직케 하였다"는 설, 그리고 "태조가 즉위 이후안변에서 석왕사를 증축할 때 백달원이 동지 80명을 인솔하여 쌀・자재를 운반하고 삼척군에 있는 5백나한을 이안한 공로로 지금의 개성군 발가산에

임방을 설치하여 옥도장을 하사하였다"고 하는 설 등이 있다.6) 이와는 달리 상류계급과 무뢰한의 탐욕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초에 부상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주장인 프랑스인 Chaillé-long-bey에 의해 저술된 《La Corée ou Chosôn》에도 보인다.

이와 같이 부상단은 적어도 조선 초부터 발생하여 그들의 支杖과 支機[지 게]를 무기와 輜重으로 이용하면서 동심결속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뒤에 도 정부에서는 국가대사나 국난위기 때 그들 행상단을 수시로 사역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상이 언제부터 조직을 갖게 되었는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그것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된 것은 고종 13년(1879) 8월에 발포된〈漢城府完文〉에서이다. 그에 의하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 추측하기 곤란하지만 그 전부터 지역적으로 각기 정해진 기율과 수령인 접장의 소임이 있어 군료를 통솔하였고, 또 산재한 조직을 전국적인 상단으로 조직하여 소규모 자본의 행상을 규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보상단은 그 '同濟相救'와 '以疏爲親以遠爲近'을 위하여 '吏無賴劇掠之類'와 '吏校輩侵掠之弊'를 금단함으로써 상권확립을 기도하였던 것이니, 한성부에서 8도의 都接長을 차출하면 圖書를지급함으로써 보상의 신분을 보장하였던 것이다.

보상과 부상은 각각 별개의 행상조합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1883년에 惠商公局을 설치하여 보상과 부상을 완전 합동케 하여 군국아문에 부속시켰다.7) 고종 22년에는 다시 商理局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부상을 左社, 보상을 右社로 구별하고 다만 역원은 상리국에 통합 단일화시켰다.8)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보호 및 관리가 시작된 것은 곧 보상 및 부상이 강대한 조직체로 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887년 경에 우리 나라에 체류하였던 Chaillé-long-bey의 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상인 자신들이 전매권 획득과 상권의 방어를 위하여 단결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 완강한 조직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권을 배경으로 실권을 행사할 수 있

⁶⁾ 柳子厚, 앞의 책.

^{7)《}惠商公局關文謄書冊》.

^{8)《}判下商理局序文》.

도록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체로 변화된 것이다.

나. 우사의 조직

가) 중점과 공사

대략 이상과 같은 연혁을 밟아 온 보부상 조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임원 선거를 민주적인 투표에 의하여 호선하는 것이며 그 선거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정기적인 총회를 열어왔다는 것이다.

우선 충남의 저산 8읍 보상의 경우를 예시하기로 한다. 필자가 목격한 바 부여 읍내에 거주하는 전 접장인 오장환씨의 담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보상회의 총회는 中點 또는 公事라고 한다. 매년 舊 3월 13일⁹⁾ 부터 수일간으로서 매년 舊 3월 10일의 부상회의 총회일보다 3일 늦으며, 총회일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야만 한다. 총회 회의장은 일정치 않고 접장이 매년 정한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역원 선거의 요령은 첫째, 8읍을 양분하여 격년제로 역원에 입후보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여·정산·홍산·임천을 한 구로 하고 한산·서천·비인·남포를 한구로 하여, 매년 교대로 선출하되 금년에 부여에서 접장에 당선되면 내후년에는 부여를 제외한 3읍 중에서 각각 1명씩 후보를 내어 그 3명 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한다.

둘째, 투표장을 설치하여 입후보자의 명단을 회람하고 자기 의중에 있는 사람의 이름 아래 권점함을 상례로 하였다. 그러나 근래는 기명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접장 이하의 역원은 각 시장별로 선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은 下差(연회 및 사무인계일)로 정해져 있다.

나) 임원과 소임

이상에서 본 중점·공사 등으로 불린 총회에서 접장 이하의 임원은 선거 제로 선출되는 것인데 역시 충남 저산 8읍이 보상을 실례로 하여 그 임원의 종류와 소임을 보기로 한다.

구전에 의하면 보상의 성인 회원의 회를「僚中」이라 한다. 이 요중의 임 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9) 3}월 13일은 조선 초 負商의 시초라고 전하는 白兎山(達元)과 관련 있는 일이라고 한다.

- ① 接長: 社의 대표로서 상업에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글을 알아 감당할만한 사람¹⁰⁾으로서 나이와 덕을 겸비하여 公員 등을 거친 자라야만 한다. 실제여러 사무를 담당하여 총회의 소집 책임과 사회를 맡으며 총회 다음날의 연회비의 조달 등을 관장하는 중직이다. 정원은 1인, 임기는 1년으로 접장은 특히당해 사의 동료중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당하였을 때는 당해 도의 도접장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② 額位:사의 고문으로서 최고 명예직이다. 접장 등의 首役을 치른 자로서 최고 연령자를 순서에 따라 1인을 추대하며 임기는 종신이다(근래에는 3년을 임기로 하였다).
- ③ 班首:영위가 관계 각 읍을 망라하는 사의 고문임에 대해서 반수는 각읍 대표의 고문이다. 각읍 단위로 총회를 열어 거기에서 당선된 자를 다시 8읍 전체 총회에서 선거하되 8읍을 2분하여 양 4읍에서 해마다 교대한다. 접장을 거친 반수를 實鑑班首라 하고 접장을 거치지 않은 반수를 南向班首라 한다. 임기는 1년, 정원 1인.
 - ④ 副班首: 연로연고자로서 실감을 갖지 못하는 자이며, 임기는 1년, 정원 1인.
 - ⑤ 副任: 각 장에서 약간 명, 이 직에 당선되면 접장에 피선될 자격을 얻는다.
 - ⑥ 本房: 각 장에서 약간 명, 자격은 부임과 같으며 공히 접장을 보좌한다.
 - ⑦ 閑散都公員: 각 장에서 1인씩.

그 밖에 《청금록》에 의하면 上公員·공원·문서공원·유사·집사·明事掌·서기·서사 등의 임원이 있으나, 그 기능·임기·정원은 시대에 따라 같지 않았다.

僚中의 산하 단체로 童豪의 모임인 동몽청이 있어 요중의 지배 아래 움직이고 대외적인 실력 행사는 이 동몽청이 담당하였는데, 정부도 이들의 폭력을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 임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大房: 요중의 영위급에 해당하며 成床(결혼) 후에는 본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정원 1인, 임기 1년.
 - ② 裨房: 각 장에서 약간 명을 선출한다. 요중의 반수에 해당한다.
 - ③ 使屬: 전달의 임무를 맡는다.

이상은 충남 저산 8읍을 단위로 한 저산 8읍 상무사 우사의 임원이며, 이 위에는 도내 각 사를 망라 통할하는 도접장과 도반수가 있다. 즉 고중 20년 (1883) 보상·부사의 합동체인 혜상공국의《關文騰書冊》에 의하면 중앙에는

^{10)《}漢城府完文(節目)》.

정부의 고관 6명으로써 公局堂上, 각 도의 前官者 8명으로써 監務官을 두어상업과는 직접 관련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 정치적 기능을 관장케 하고 그 밑에 각 도마다 도접장과 도반수를 중앙에서 임명하였다. 그 뒤 고종 22년에 개칭된 상리국의 節目에는 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1인·도공원 1인·서기공원 4인·본방공원 2인·집사 10인·사령 5인·직방 2인의 본국 임원을 가지며, 그 절목 끝의 〈京都座目〉에는 우통령 1인·좌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2인·도공원 1인·본방공원 2인·서기 4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2인·도공원 1인·본방공원 2인·서기 4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도공원 1인·명사장 2인·본방공원 2인·서기공원 4인·도접자 1인·집사 9인으로 되어 있다. 여러 도의 도접장과 도반수는 중앙에서 임명하고 기타 중앙의 각임원도 여러 도의 접장 중에서 골라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각 도 도반수·도접장 및 지방 각 임원의 職印은 상리국 본국에서 조각해 줌으로써 문서 위조를 막고 통제하였다.

이리하여 중앙에서 임명된 도접장은 소관 도내의 행상을 통섭하여 紀律科條를 엄격히 세우고 강목을 세웠다. 보상회원에 대하여는 각각 信標라는 일종의 신분증을 급여하였는데 이 신표에는 업종과 성명(〇〇商 姓名〇〇〇), 사는 곳, 소속한 任所 등을 기록하여 1장은 대조로 남겨두고 의심날 때는 수시로 살펴 奸僞를 예방하였다. 만약에 營邑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가 있으면 도접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는 다시 한성부에 보고하여 처결을 기다렸다.

도접장은 소관 도내의 보상회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항상 인원을 파악하였다. 도접장이 각 읍 임소에 행렬할 때는 그 곳 소임이 재화를 제공하였다. 도접장의 별칭은 上任이라고 하였다.

(2) 기 능

가. 요원의 의무와 권리

보상회는 '同濟相救 以疎爲親 以遠爲近'하며 '爲上愛黨'하고 '病救死葬'함으로써 '商利資生'하고자 하였던 행상조합인 까닭에, 특히 회원 각자 자신을 단속하고 그들의 上任과 동료에 대한 예의 범절의 돈독을 존중하여 이를 배반

하는 요중에 대하여는 응분의 벌칙을 적용하였다.

死亡相助에 관한 내용은 商賈稧 시행사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접장 부의 上布 2필 壯紙 3속
 ↑ 代 20냥

 • 공원 부의 中布 2필 장지 2속
 ↑ 代 8냥

 • 유사 부의 中・下布 2필 백지 3속
 ↑ 代 5냥

 • 집사 부의 중・하포 2필 백지 3속
 ↑ 代 5냥

 • 한산인 부의
 3냥

 • 한산인 부의
 3냥

 • 동몽소임 부의
 4냥

이것은 요중 역원들의 사망시에 부담하였던 부의이지만 물론 일반요원의 경우에도 기술한 바에 의하였고, 大房을 지내지 않은 소임에 관하여는 閑散人의 에에 따라 3냥 2전으로 하였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미덕은 비단 그 단체원만이 아니라 社外의 일반인에게도 미쳐서 노상의 질병환자가 있으면 약을 써서 치료하였으며, 市店간에서 사망한 객사자의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그들의 본업인 상업상의 규율을 보면 손해 본 요중에게는 자본의 융통까지도 해주며 그 대신 상업도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폭리와 사기행위를 단속하였다. 또한 총회 및 기타 연회에 이유없이 불참할 때에는 벌전 1 낭을 거두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 신분적으로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위하여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그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무와 아울러 요중의 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요원의 특별한 권리라기보다도 상인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었다. 또한 요원 이외의 불량배 들이 행상을 가장하고 그들의 상업신의를 손상할 때에 경찰권을 가져 조사 단속할 수 있었으며, 외부인에 의한 여러 폐단을 엄히 경계하고 그들 상인의 안전한 생업 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동료가 아니면 시장에 섞여 들어갈 수 없게 함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였으니 일종의 전매특권의 행사인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부상요원이 보상의 상품으로써 행상하려 할 때, 또는 그와 반대의 경우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上任者가 필요 이상으로 재화 를 거두어 낭비하거나 요원을 괴롭혔을 때는 道의 두목과 여러 임소의 접장 을 엄중 처단케 하였던 일도 있었다. 이 밖에 시전의 수세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및 시전의 세금징수를 대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보상은 자기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관 지역 내의 상품독점권과 경찰권, 그리고 세금징수권을 갖기도 하였다.

나. 재정 및 객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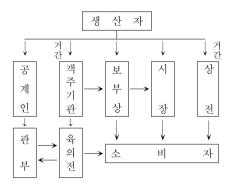
다음에는 이 보상단의 운영을 위한 재정 관계를 보면, 첫째 관부로부터 시장세금 징수의 특권을 받고, 둘째 요원들에게 급여한 신표 1장의 대가로 3냥을 받았으며, 셋째 총회 때의 연회비와 祠祭 때의 경비를 각 시장에서 임시로 조달하였으며, 넷째 각종 禁律 위반자에게서 징수한 벌금 등으로써 요중운영의 재원을 충당하였다고 하겠다.

저산 8읍은 문자 그대로 한산을 중심으로 저포생산이 유명하였기 때문에 그 매매액수는 고액에 달하였다. 이 8읍의 저포세로써 정부는 '綏慶園香炭之需'와 '補弊之資'에 충당하였는데 그 세액은 상당한 금액에 달하였다. 저산 8읍의 보상이 위탁받은 금액을 보면 1년에 3,550냥을 납부하되 6월 30일과 10월 30일, 즉 춘추 2기로 나누어 분납하고 1차에 1,775냥씩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요중에게는 그 이상의 세금을 매년 징수해야만 했다. 상무국 절목에는 요원으로 가입하면 신표를 급여하되 1장에 3냥씩을 받아서 그 중 1냥을 본국에 상납하고 남은 2냥 중 5전은 도반수에게, 4전은 接長 紙價로, 1전은 소임 지가로 충당하며, 나머지 1냥은 한성부에 駄價로 납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 요원이 이유없이 연회에 불참하면 罰錢 1냥씩을 받았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상은 요중 수입의 대략이지만 지출 종목으로서는 총회 및 그 연회비·역원 및 요원 사망시의 부의금·사제 비용·요중의 경비 및 잡비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에 실패하고 자금이 부족한 요원에 대하여 요중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상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객주인데 이 객주는 경향 각지의 물화집산지에서 물화의 도매와 위탁판매업·창고업, 그리고 화물수송업을 겸하며, 또한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금융업 등을 겸하고 있는 상업기관이었다. 이러한 객주와 보부상과는 특히 원활한 상품교류를 위하여 밀접히연결되었다. 上任事 객주는 상업상으로는 보부상의 主人으로서 신분상으로는 상임(도접장)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관계가 밀접하였으나, 객주가 보부상의 이익을 침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듯하다.

정주하는 大商인 객주는 시장을 순력하는 소상인인 보부상의 행동 여하에 따라 그들의 판로 개척과 영업의 홍패가 좌우되었다. 보부상과 객주를 중심 으로 그 거래 관계를 도시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의전을 제외한 5상인들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였다. 육의전은 상품을 주로 객주로부터, 또 고급 중국산 상품의 경우에는 관부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서울의 상전과 객주 등에는 거간이 있어 상품매매의 중매역할을 하였다.

이상에서 조선 말기의 지방행상단인 보상조합의 발생과 기능 등에 관하여 충청우도(남도) 저산 8구의 상무사 우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충남의 보상이 보부상 전반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조선 말부터의 전통을 간직한 현재의 유제가 본질적으로 조선초기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하겠다.

보부상은 사실상 상인조합으로서의 조직이 완비된 점, 그 단결력이 굳은

점, 요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법규가 엄격한 점, 그리고 상호부조의 미풍을 유지한 점 등은 다른 사회에서는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상업자본의 축적을 보지 못하고 항상 경제적으로 무력한 존재로서 때로는 정치적 세력에 이용되거나 폭력적인 집단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 원인을 재고하건대 반드시 관리의 주구·약탈로만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 말기의 허약한 정치경제의 전반적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귀결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이 상단의 애국사상과 완강한 조직력을 두려워한 일제는 이를 탄압·폐지시키려 하였으나, 그들은 생명과 재산을 바쳐가며 이에 항쟁하면서 계승하려고 애써 왔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충청우도 저산 8구의 상무사 우사에 전래하는 口碑로써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다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희귀하게도 이 곳 충남에서 유독 강대한 조직으로 그 전통을 계승해오고 있는 것이다.

2) 상무사 좌사

1955년 3월 부여지방을 답사한 결과 충청우도 저산 8구 상무사 우사(보상)에 관한 사료를 얻어 이미 발표한 바 있고, 곧이어 다시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에 거주하는 당시의 접장이었던 이성직씨를 찾아 그가 보관하였던 문헌을조사한 결과 앞에서 살핀 우사(보상)와 별개의 상단인 좌사, 즉 부상의 조직이 보상의 그것보다 훨씬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부상단도 지역적으로 보상과 동일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즉 충남의 부여·정산·홍산·임천·한산·비인·남포 등 저포(모시) 생산지를 중심으로 소위「저산 8읍」이라 칭하고, 그 8읍을 순차적으로 市日을 따라 돌며한 개의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행상단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명칭은 정확히 말하면「忠淸右道 苧産八區 商務社左社」라 한다.

상무사 좌사 측 부상단에서 역대로 보존하고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부상 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명코자 한다.

조사 당시의 접장인 이성직씨가 소장하고 있는 문헌 역시 보상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특설 단상에 신주처럼 모셔놓고 매월 초하루와 15일에 제사지내 고 있었다. 부상 접장의 보관문헌 및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목록류 문건

1. 임흥청금록	1책
2. 청금록 권 2	1책
3. 서부청금록 권 3	1책
4. 요중명부	1책
5. 서부좌지사공문서전장기	1책

В

. 규약류 문건	
1. 판하상리국절목	1책
2. 혜상공국서	1책
3. 비변사완문	1책
4. 완문	1책
5. 완문 권 1	1책
6. 선생안 권 2	1책
7. 서부좌사선생안	1책
8. 상규단취지서	1책
9. 책판하절목 권 1	1책
10. 절목 권 2	1책
11. 절목 권 3	1책
12. 절목 권 4	1책
13. 절목 권 5	1책
14. 상무장정부칙	1책
15. 상무금규칙	1책
16. 대한상무조합규칙	1책

C. 기 물

1. 支杖	1주
2. 竹皮幅(패랭이)	1개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부상의 연혁에 관하여는 이설이 있어 일정치 않으나 〈惠商公局序〉와〈完

文〉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혜상공국서〉에는 부상의 창설 연대가 상세하지 않으나 다만 고사에 기자조선 시대의 부상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 으니, 부상을 시켜 버드나무를 심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신라시대에는 부상을 때때로 동원하여 돌을 운반하고 다듬어 무너진 성곽을 보수하였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양왕 때에 寧丁浦에 소금을 운반 하였다는 사실이 《骨亭澹翁日記》에 보이므로 부상배가 전국 방방곡곡을 순 력하면서 행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부상단의 단체활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상단의 합법적 단체권을 가진 소위「負商廳」의 창설에 대해서는 역시 이설이 적지 않다. 대체로 이성계의 조선 건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대가로 소위「부상청」이 창설된 것이라 하겠다.

부상청의 창설은 부상배들의 충성의 대가였고, 이후 국가의 보호 아래 육성 신장되었던 것이다. 부상청의 최초의 五道都班首는 兎山 白達元이니, 그는 고려 말기 전국의 부상 중의 한 사람으로 이성계의 건국창업에 직·간접으로 충성을 다한 자이다.

이들 부상조합원은 정부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국가대사시나 국난위기 때에 수시로 사역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왕이 선조의 능을 참배할 때수행 행렬에 봉사하였고 심지어 정부관청의 고관들까지 그들을 자유롭게 호출하여 특별 봉사(주로 탐정 봉사)를 시켰던 것이다. Daniel L. Gifford의 저서 《Every day Life in Korea》에 보이듯이, 그들 부상들은 빈객인 장관의 특별 호송을 위하여 정발되어 봉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부상조합의 특징은 그들의 행상과 함께 진실로 봉건적 관념에서 정부에 대한 봉사로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완문에 의하면 임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산성의 대첩도 부상의 멸사봉공의 충성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자호란 당시에도 인조가 남한 산성에 거둥할 때 쌀을 짊어지고 성곽을 지키는 등 오랑캐의 방어에 헌신한 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부상들이 결사적으로 군량을 보급하여 충성을 다한 공훈을 가

상히 여겨 전란 후에 부상들을 불러 벼슬을 주려 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단지 다섯가지 물건, 즉 어·염·목기·토기·무쇠그릇 등의 전매권을 요구 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들의 소원대로 다섯가지 물건의 전매권을 부여 하였다.

부상청의 소속관계를 보면 고종 20년에 중앙에 혜상공국을 설치하고 부상과 보상단을 합쳐 군국아문에 부속시켰다. 다시 고종 22년에는 혜상공국을 상리국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부상을 좌단, 보상을 우단으로 개칭하였고, 고종 31년에 부상과 보상을 농상아문의 관할 아래 소속시켰다. 광무 초년에는 황국중앙총상회에 소속시키고 황국협회에 이속시켰다. 광무 3년에 상무사로 개편하고 李圭恒이 통솔하는 진흥회사에 속하게 하였는데 이 때 부상을 좌사로 보상을 우사로 개칭하였다. 지금도 저산 8읍의 부상을 상무사 좌사라하고, 저산 8읍의 보상을 상무사 우사라고 하여 그 당시의 명칭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상과 보상은 광무 7년에 공제소로 이관되었으며 그 사무소는 寺洞(지금의 인사동)에 있었다. 그 후 다시 상민회로 옮기고 광무 8년에 진명회에 이속시켰으나 부진하므로, 같은 해 12월에 발족된 공진회에 이속시켰다.

그 후 1910년에 일제는 애국적인 상인단체인 부상 및 보상조합의 말살을 꾀하였으므로, 부상단과 보상단이 거의 소멸되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전통적인 조직과 친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부여·한산을 일원으로 하는 소위 저산 8읍의 부상·보상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부상의 협동정신

부상의 협동정신은 재래 우리 나라의 어느 집단 사회보다도 강력하였다.

원래 부상이란 대체로 천민 출신으로서 등에 무거운 물건을 짊어지고 농촌과 文武之場을 순회하면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생업을 유지하던 자들이었으므로 사회의 천시를 면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력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부상 상호간의 협동 정신을 요약하면 병이 들면 구원하고 班首와 接長을 아버지와 같이 대접하며, 公員과 執事는 자식과 같이 지켜 주고 윗사람을 섬기고 黨을 사랑하며 병이 나면 구해주고 죽으면 장례지내줌을 신조로 삼 았다.

그들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단체이지만 충의의 정신만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들의 충의정신과 협동정신을 가상히 여겨, 관리로 하여금 임의로 부상을 침어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어 · 염 · 무쇠그릇 · 토기 · 목기 등 5종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하고 안전하게 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에 부상배들이 이 기강을 문란시키고 본래의 정신인 협동정신과 충의의 정신을 망각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의리와 협동에 관해서 강력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절목〉이나 또〈林鴻靑衿錄〉에 의하면 부상회원 상호간의 疾病喪葬과 상호구호에 있어서는 형제지의와 예로써 다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부상조합은 그들 중에서 선출된 수령에 의하여 지배되며 회원들은 일정한 신호로써 서로 알리고, 필요한 때에는 동료의 조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부담하여 매장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기금을 비축하여 두었다고 한다. 부상회원들은 매년 50냥을 소속 본부에 납입하여 그 자본을 증식하여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그 금전에 대해서는 비록 두목이라 할지라도 횡령·유용해서는 안되었다. 만약에 이를 유용 또는 횡령했을 때에는 관가에 제소하여 징벌하였다.

이상 부상단의 협동정신의 성격을 요약한다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이익공 동체적인 상인단체이지만 그들의 내부 조직을 통해 행동 규제를 살펴보면, 혈연공동체적이며 정신공동체적인 성격을 현저히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그들의 애국사상의 실천은 실로 타의 모법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초월한 혈연공동체적인 誼稧를 극진히 하고 있었다.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부상은 외부로부터의 멸시와 탐욕에 대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 초 이래로 조합을 구성하게 되었지만, 초기의 내부조직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1879년 9월에 발표된 〈한성부완문〉에 의해서도 부상의 조직이 언제부 터 존재하였는지는 추측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이전부터 지역적으로 두령인 접장이 엄격한 기율 아래 군료를 통솔해 왔던 것을 다시 전국적인 조직으로 강화하여 부상들을 규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부상단이 조직을 필요로 한 것은 보상의 그것과 같이 同濟相救와 經濟的 再生, 그리고 吏校輩가 侵掠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부상의 임원은 중앙임원과 지방임원으로 나눌 수 있으니〈판하절목〉에 의하면 중앙임원으로는 팔도임방도존위 1인·팔도임방부존위 1인·팔도임방삼존위 1인·팔도임방삼존위 1인·팔도임방삼존위 1인·팔도임방삼존위 1인·팔도임방삼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위 1인·팔도임방소존의 기와집명 도임방도점장 1인 그리고 공원 8명·본방공원 7명·집사 8명·팔도도반수 8명도합 35명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유급 임원으로 한성부 중부동에 기와집 41칸을 도임방을 갖고 武衛所로부터 2,326냥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도임방의 경비조로 춘추 2기로 나누어 각 600양식을 역시 무위소로부터 받아 각 도반수에게 나누어 주었다.

중앙임방의 임원은 때에 따라 그 수와 명칭이 동일하지 않았으니, 〈혜상공 국관문등서책〉에는 감무관 8명·도접장 8명·도반수 8명 도합 24명으로 되어 있고, 1885년에 발족한〈상리국절목〉에는 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1인·도공원 1인·서기공원 4인·본방공원 2인·접사 10인·사명 5인·방직 2인 도합 29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성부의임원은〈상리국절목〉京都座目에 좌통령 1인·우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2인·도공원 1인·본방공원 2인·서기 4인·도접사 10인 도합 24인으로 되어 있다.

지방임원도 중앙임원과 마찬가지로 그 명칭과 수가 때와 곳에 따라 동일하지 않았으니〈절목〉에는 반수 1인·부반수 1인·공원 2~3인·별공원 2~4인·도집사 3~5인·서기 2~4인으로 도합 11~18명 내외로 되어 있고,〈林鴻靑衿錄〉에는 영위 1인·구임 1인·창설접장 1인·본방공원 1인·도공원 1인·별공원 1인·도집사 1인·서기 1인 도합 13인으로 되어 있다.

특히〈철목〉에는 접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접장이 負商員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까닭이다. 반수·접장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임기 전이라도 근무 성적이 불량하면 총회에서 개선할 수 있었다.

임원은 요중에서 연령과 덕망을 겸비한 자라야 하며 영위는 부상단의 고

문으로서 임기는 종신적이었다. 반수는 성질상 두 종류가 있었으니 實鑑班首(이미 接長을 지낸 자)와 南向班首(접장을 지내지 않은 자)가 그것이다.

이상으로서 충청우도 저산 8읍 상무사 좌사, 즉 부상에 관한 그 연혁과 조직 그리고 협동정신의 내용에 대하여 논급함으로써 보상의 그것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보부상의 성격을 대략 살펴볼 수 있었다.

3) 객주와 여각

(1) 객주의 기원

객주는 여각과 구별되나 지방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는 곳도 있다. 굳이 구별한다면 자본의 다과에 따라 많은 것이 여각, 적은 것이 객주일 것이다. 그러나 객주의 업무는 매매의 중개·여객업·은행업 등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질의 것이다. 객주란 객상 주인의 뜻으로 지방에서 모여드는 객상을 위하여 居中周旋·물품매매를 성립시키는 여러 업무를 영위하였다. 즉 위탁판매·대부·예금·手形의 발행과 때로는 숙박업을 겸하는 자도 있었다.

객주의 기원은 상세하지 않으나 신라통일기로 추정하는 설도 있다. 그 근 거로는 신라통일기에는 이미 항해술이 발달하여 당이나 일본은 물론 아라비 아와 서역제국과도 내왕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국제무역이 점차 증가하여 전 라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일본과 송의 객선 왕래가 잦았으며, 대식국 貢使 및 商賈가 늘어나 상업의 번영을 보게 되면서, 자연 주막·여인숙 또는 주인제 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한다. 생각컨대 시초에는 주인이 여객에게 매매의 상대방을 구해 주고 이에 대한 보수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점차 습관화되어 인습적으로 화물매매의 매개를 본업으로 삼고 그 보수도 당연한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2) 객주의 종류

객주의 종류로는 灣商客主·褓負商客主·旅閣 등을 들 수 있다. 만상객주

는 중국 상품의 위탁매매를 위한 것으로 만상의 「만」은 義州灣을 지칭한다. 조선시대의 중국의 상품은 의주만 상인을 거쳐 조선에 수입되며, 의주만 상인의 객주를 만상객주라 칭하였다. 이 만상객주는 근래까지 존속하였으나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자신들의 독점적 상행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명칭도 사라졌다.

보부상객주는 주로 三南地方 보부상의 객주로서 보부상의 행상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그 취급 화물과 상품의 생산지역에 따라 나뉘어 독점적으로 활동하였다.

여각은 해안 각 포에 존재하며 곡물·어염·해구류 등의 위탁판매 또는 매입을 업으로 삼고 대개 큰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각은 여관업도 겸하였던 것으로 그들은 관헌과 권력가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거래지방에서 오는 華客을 거의 강제적으로 숙박케 하여 규정된 수수료를 받았는데 특히 마포일대의 여객이 삼하였다. 해안의 여각은 원래 각 포에 내박하는 船客主가 발전·변모한 형태로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널리 상품을 취급 거래하는 대상급에 속하였다.

(3) 객주의 업무

객주의 주된 업무로는 委託販賣와 預金・貸付金業・어음의 발행과 인수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위탁판매를 살펴보겠다. 객주에서 주관하는 물화의 매매는 거간 즉 중매인을 통하여 행하였다. 거간에는 객주에 전속된「내거간」과 자기집에서 다니는「외거간」이 있었다. 이들 거간이 물화를 매매하면 거간 수수료로서 곡물은 1석에 2전 내지 4전, 기타 잡화물은 매매액의 100분의 1을 買主에게서 징수하며, 객주는 또한 내외 2종의 口錢을 받았다. 內口는 매주에게서 곡물 1석에 10전 내지 20전, 특히 어염에는 그 1할을 징수하였다. 外口는 매주로부터 받은 거간수수료중에서 그 반액을 징수하였다. 또 객주는 일단 자기에게 위탁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할 때에는 過口란 명칭으로 징수하였다.

객주의 예금에는 첫째 華客이 위탁한 물품을 매각하여 그 금액을 객주에 게 예금한 데 대한 이식이니, 이 이식율은 개성에서는 월 1分 2厘 5毛였다고 하다.

그리고 객주의 금전대부에는 첫째 물품의 판매위탁에 대한 假渡金, 둘째로 물품의 위탁판매를 조건으로 하여 그 매상을 위한 前渡金, 셋째로 토지를 담 보로 한 대부금 등이 있었다.

어음은 요즘의 수표와 같은 것으로 객주가 발행한 경우는 첫째 延取引일경우 그 대금의 지불기일에 이를 때까지 발행하는 것, 둘째 타인의 청에 의하여 연취인대금의 결제를 위한 신용대부, 셋째 토지·가옥 등과 같은 담보가 있을 때 금전을 대부해 주는 방법의 하나로서 어음을 발행하는 것 등이었다. 어음의 인수라는 것은 매매 양 당사자 중 買主가 현금이 없이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면, 賣主는 현금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객주에게 인수시켜 돈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수표할인과 유사한 행위로서금융의 원활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先給·先出給 또는 先下라고 불렀다.

〈劉元東〉

3. 화폐의 유통

1) 배 경

우리나라 화폐사 발전과정에서 볼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체제와 품질을 일정하게 규격화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했던 것은 고려 성종 15년(999)에 鐵錢을 주조 유통시켰던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 당시에는 唐錢·宋錢 등 중국화폐가 유입되어 극히 제한된 일부 유통계에서 사용되었을 뿐, 대체로布·米 등 물품화폐와 稱量金銀貨가 일반유통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정부가 철전을 주조 유통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한국화폐사상 자연경제적 유통질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의 도입·실시를 위해 취한 최초의 시도라 할 것이다. 그 이후 고려정부는 계속해서「海東通寶」등 각종의 동전과「銀瓶」을

법화로 주조 유통시켰고, 말엽에는 元의 지폐(寶鈔)와 明錢 등이 유입, 통용되는 상황에서 楮貨의 人造유통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정부가 명목화폐의 통용 목적으로 거듭 유통 보급시키려 했던 철전·동전·은병 및저화들 중 어느 한 가지 화폐도 지속적으로 통용되지 못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자연발생적인 포·미 등 물품화폐와 칭량은화가 의연히 공·사 유통계를지배하였다. 조선정부는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즉 태종 8년(1408)에 화폐정책 외적인 대명정책적 고려에서고려시대 이래 중요한 통화기능을 담당해온 칭량은화의 통용을 금지시켰다.이로써 조선 초기에는 포·미 등 물품화폐가 공·사 유통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개국 초기의 혼란 내지 국내·외적 불안을 점차 극복하면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에 걸쳐서 제도정비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지배적 유통질서인 포·미 등 물품화폐에 의한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수용하기 위해 저화와 동전의 유통 보급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같은 명목화폐제도의 도입시도가 좌절되면, 미봉책내지는 반동으로 당시의 유통계를 지배하던 물품화폐인 布貨를 法貨化하려 하거나, 실용가치를 전제로 한 箭幣를 법화로 주조 유통시키려 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10세기 말부터 거듭 시도해 왔던 것처럼, 조선정부가 자연경 제 체제하의 물품화폐에 의한 유통 질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수용하 기 위해 저화나 동전은 물론 포화와 箭幣 등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게 된 배경으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역사적 배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려정부는 10세기 말 이후 철전·동전·은병·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하는 등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도입 실시하기 위한 화폐정책을 거듭 추진하였다. 고려시대의 화폐유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조선정부가 저화·동전·포화·전폐 등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사실상 한국화폐사 발전 과정에서 볼 때, 10세기 말 이후의 고려시대나 왜란 이전의 조선 전기는 명목화폐제도의 도입시

도기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성격을 같이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화폐유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조선 초기 화폐정책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듯이,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의 화폐유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왜란이후, 즉 17세기 초부터 조선정부가 동전을 법화로 채택, 유통보급시키기 이해 화폐유통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1)

둘째, 조선정부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며 개국 초기의 민중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 당시 정부는 저화를 유통 보급시킴으로써 "국용을 넉넉하게 하고 民食을 풍족케 할수 있다"2)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저화는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좋은 법이다"3)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 왕조의 경제기반 확립을 필요로 하는 개국 초기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 같다. 사실상 저화나 銅錢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농업에 경제기반을 둔 조선사회에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짧은 기일 내에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재정조달의 방법이기도 하였다. 또한 저화나 동전 등이 유통 보급됨으로써 화폐경제가 발전하면 제반 사회생산력이 증진되고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화폐유통에 대한 가치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 전기에는 저화나 동전과 같은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셋째, 중앙집권적 조선정부는 중요한 利權(經濟權)인 화폐의 주조 발행에 대한 일체의 지배권을 국가 또는 국왕이 장악하기 위해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하거나, 布貨 등 물품화폐의 法貨化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정부는 전통적으로 국가통치권의 중앙집중화를 속성으로 하였기때문에 "利權은 위(국가 또는 국왕)에 있다"거나, "利權이 백성에게 있는 것은

¹⁾ 元裕漢,〈貨幣流通政策〉(《韓國史論》11-朝鮮前期의 商工業-, 국사편찬위원회, 1982).

^{2) 《}太宗實錄》 권 6, 태종 3년 8월 을해.

^{3) 《}太宗實錄》 권 4, 태종 2년 9월 갑진.

옳지 않다"4)고 했듯이, 국내의 경제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백성에게로 돌아 갈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조선 초기의 일반 유통계에서는 백성이 생산하고, 또는 그들에 의해 지배되는 포·미 등 물품화폐가 통용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利權在上'이란 전통적 정치이념을 강조하면서 백성에 의해 지배되는 포·미 등 물품화폐의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가 그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저화·동전 등을 법화로 사용하는 화폐제도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권재상론'은 조선 초기와 같이 명목화폐제도의 도입 시도기에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말부터「常平通寶」가 법화로 채택되는 과정이나, 그것이 계속 유통되어 화폐경제가 확대보급되는 과정에서도 종종 화폐주조 관리체계의 중앙집권화를 위한 논리적근거로 제시되었다.

넷째, 일찍부터 화폐경제가 발달한 중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조선 초기에 저화·동전 등의 통용을 시도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문화가 일찍부터 중국의 문물제도를 주체적으로수용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한국 화폐사 발전도 화폐경제가 일찍부터 발달한 중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하여 선사시대나 고대사회에서도 그러했다고 하지만, 비교적 연대가 확실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철전·동전·저화·은화 등 각종 화폐를 유통 보급시키고자 한그 중요한 동기가 일찍부터 화폐경제가 발달한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에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성종 15년(999)에 철전통용을 시도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중국의 제반 문물제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고 있던 조선 초기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저화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왜란 이후는 물론, 1890년대에 근대적 은본위제도를 수용하기까지도 중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지속되었던 것이다.5)

^{4) 《}太宗實錄》 권 6, 태종 3년 9월 을해・을유.

⁵⁾ 李鍾英,〈朝鮮初 貨幣制의 變遷〉(《人文科學》7, 延世大, 1962). 元裕漢,《朝鮮後期 貨幣史研究》(韓國研究院, 1975).

다섯째, 조선정부가 초기에 포 · 미 등 물품화폐가 가지는 한계를 느끼고 명목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적 요청에 따라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 통 보급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조선정부는 개국 초기부 터 말엽인 상공업은 본업인 농업을 해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농업을 적 극 장려하는 반면 상공업 발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억제하였다. 이처럼 상 공업과 농업과의 관계를 대립 상충관계로 인식했기 때문에, 중농억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공업생산과 상품 · 교환경제 발전은 활성화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볼 때 상공업과 농업의 관계는 대립 상충관계이기 보다 는 상호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중농억말정책하에서도 상공업, 특히 상업은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낼 만큼 발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성을 비롯한 도시상업, 지방상업, 선박을 이용하여 연해에서 활 동하는 水商, 국경지대의 潛貿易 등이 전개되었다. 또한 상업에 종사하는 자 가 증가하여 농업인구의 축소 내지 농업생산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 에서 정부의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또한 한갖 추론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 으나, 조선 초기 이래로 일관되게 중농억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상공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의 일반유통계에서는 실용가 치가 없는 품질 나쁜 포. 즉 麤布가 교환매개로 사용되었으리만큼 수공업을 비롯한 제반 사회생산과 상품·교환경제는 성장 발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제반 사회생산과 상품 · 교환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 었다고는 하지만 그 발전수준이 실용가치를 중요시하는 일반 민중의 화폐가 지관을, 실용가치가 적은 저화나 동전의 명목가치를 존중하는 화폐가치관으 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다. 이와같은 점은 일 반 민중이 저화나 동전 등은 추워도 입을 수 없고 주려도 먹을 수 없는 것 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 저화와 동전이 법화로 계속 유통보급될 수 없었다6)고 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⁶⁾ 宮元兎一,〈朝鮮初期の銅錢について〉(《朝鮮學報》2, 1951). 田壽炳,〈朝鮮太宗代의 貨幣政策-楮貨流通을 中心으로〉(《韓國史研究》40, 1983). 元裕漢, 위의 글.

^{——,〈}官僚學者 金藎國의 貨幣經濟論〉(《朝鮮時代史研究》, 1989).

여섯째,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는 포·미 등 물품화폐와 비교해 볼 때, 교환매개·가치척도·운반수단·지불수단·저장수단·분할수단 등 화폐로서의 제반 기능이 우수한 것이다. 이 점이 조선정부가 초기에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유통 보급시키게 된 기본적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2) 저화·동전 유통정책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앞에서 조선정부가 금·은 칭량화폐의 통용이 금지된 왕조 초기에 포·미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 등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게 된 배경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조선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실들을 배경으로 과연 화폐 유통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가. 다음에서는 정부당국이 저화나 동전 등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시도한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를 대강 살펴보고자 한다.

태조 3년(1394) 7월에 호조판서 李敏道는 錢幣(鑄貨)制의 실시를 건의했으나, 채택 실시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 당시 조선정부가 전폐제를 채용하지 않았던 것은, 고려시대에 철전이나 동전 등 각종 주화를 법화로 유통시키기위해 거듭 시도한 화폐 유통정책이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과, 흉작 등 전폐제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원인이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태종 원년(1401) 4월에 좌의정 河崙의 건의에 따라 저화제를 실시할 것과 그 업무를 관장할 관청으로 司贍 濖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정부가 저화를 법화로 통용하기 위해 저화제의 채용을 결정하게 된 것은, 공양왕 3년(1391)에 추진한 저화 유통정책이통용 직전에 여말 선초 국내외 정세의 혼란으로 좌덜되었기 때문에 저화와통용을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정책적 의욕에 기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저화 유통정책은 고려 말에 추진되었던 것이지만, 조선을 개창한 이성계일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때, 조선 초기의 저화제 채용은 고

려 말에 시도하다가 좌절되었던 저화 유통정책의 계승 내지 부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화제의 채용이 결정된 후에, 그에 반 대하여 楮紙보다 내구성이 강한 淸淡色 正五升布로「朝鮮布貨」를 만들어 법화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 고위관료도 있었다. 그러나 태종의 강한 정책적 의욕으로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이 추진되었다.7)

조선 초기에 만들어 사용한 저화는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그 규격과 체재 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저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楮注紙로 만든 것은 길이가 1척 6촌이며 폭이 1척 4촌이고. 楮常 紙로 만든 것은 길이가 1척 1촌이며 폭이 1척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정부는 저화 1매의 통용가치를 5승포 1필 또는 米 2斗로 비정하여 발행 하는 한편 저화의 유통 보급방법으로서 중앙에는 태종 2년(1402) 5월 1일까 지. 지방에는 5월 15일까지 5승포의 통용을 일체 금지하기로 하였다. 정부당 국은 계속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화의 유통 보급을 시도했으나 일반 유 통계에서 명목화폐인 저화의 통용은 거부되고, 국가의 통용금지 조치에도 불 구하고 물품화폐인 포화가 중요한 통화기능을 담당 수행하였다. 이로써 통용 을 금지했던 5승포를 저화와 병용하도록 하였다. 저화만을 법화로 사용하겠 다는 정책방침을 완화하고 포화를 병용케 하자. 저화는 국가가 부여한 법적 통용력과 경제적 신용을 상실하고 마침내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태종 3년(1403) 9월 저화를 印造 발행하던 사섬서를 폐지하는 동 시에 1년 9개월만에 楮貨制의 실시를 중단시킴으로써. 화폐제도는 종래의 물 품화폐 유통체제로 복귀하게 되었다.8)

그러나 태종은 10년(1410) 7월에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7년 전에 저화제도의 실시를 중단시켰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사섬서로

⁷⁾ 李鍾英, 앞의 글.

元裕漢, 앞의 글(1982).

權仁赫,〈朝鮮初期 貨幣流通研究-特司 太宗代 楮貨를 中心으로-〉(《歴史教育》32,1982).

⁸⁾ 李鍾英, 위의 글.

宮原兎一、〈朝鮮初期の楮貨制について〉(《東洋史論叢》3,1954).

하여금 다시 저화통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행케 하였다. 이로써 종래 印造하여 退藏해 두었던 저화, 즉「建文年間所造楮貨」에 '永樂'이란 연호만찍어서 그 해 9월부터 발행하였다. 그 당시 저화의 통용가치는 1枚에 米 1 斗, 30枚에 木棉 1필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저화 유통정책의 일환으로서 5승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자는 중죄로 다스리는 등 종래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저화 유통방법을 쓰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당국의 저화 유통정책에도 불구하고 저화에 대한 일반 민중의 공신력은 약화되어 저화통용을 꺼려한 나머지 장시에서는 상품의 매매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 유통계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정부당국은 다시 엄벌주의 내지 강경일변도적인 저화 유통방법, 즉 포화통용을 엄금하고 저화만을 법화로 사용케 하는 방침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태종 11년(1411) 6월에 한성부로 하여금 斗升 이하의 미곡매매는 雜物을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태종 15년(1415) 정월에는 收贖을 제외한 기타 매매거래에 포화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마침내 楮貨全用合을 폐기된 셈이 되었다.

이처럼 포화가 사실상 法貨로서의 공적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조선정부는 태종 15년(1415) 4월에 布帛稅인 着稅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착세는 布帛에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로서 포백이 화폐로 통용될수 있으려면 국가의 검열·着印을 받아야만 했는데, 착인할 때에 포백의 소유자는 布價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저화를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화폐인 布貨의 통용이 합법화되어 그것이 법화로서 기능하게 됨에 따라 저화의유통가치는 폭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정부가 태종 15년(1415) 포백세인 착세의 징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화로 동전을 주조 유통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태종 15년 5월 知申事 柳思訥이 신설된 착세를 징수하는 데 저화 1매 미만의 적은 액수를 처리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동전의 주조 유통을 제의한 사실이 그것이었다. 동전을 주조 유통하면 착세의 징수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소액거래에도 편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로써 동전을 법화로 주

조 유통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어, 그 해 6월에 호조의 건의에 따라 唐의「開元通寶」의 체재와 품질을 본딴「朝鮮通寶」의 주조 유통문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조선통보」의 주조사업이 착수되려던 시기에 사간원이 楮貨制의보완목적으로 추진된 동전 주조 유통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전 주조 유통계획은 중단되었다. 동전을 저화와 함께 법화로 주조 유통하려던 계획이 중단된 중요한 원인은, 일반 민중이 동전만 사용하게되어 저화는 유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데 있었다. 사실상 동전이 주조 유통되기도 전에 일반 유통계에서는 저화의 유통가치가 폭락되어 저화로는 미곡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조선정부는 일부 고급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태종의 주장에 따라 추진한 동전 주조 유통계획이중단되자, 저화제 실시를 일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화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유통계는 물품화폐인 포화가 지배하고 저화의 유통가치는폭락하여 '賤物'처럼 취급되었다. 이에 정부당국은 흉년을 이유로 하여 楮貨專用을 잠시 중지하고 포화・잡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저화는 통용이 중지된 셈이었다. 한편 세종 4년(1422) 말에 제기된 바 있는 동전 주조 유통론을 이듬해 9월에 받아들여서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의정부와 6조의 합동회의에서 동전을 주조 발행하여 법화인 楮貨와 병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개원통보」의 체제와 품질을 본따서 10錢을 1兩으로 하고, 錢文은「조선통보」라 하여 銅 1斤을 바치는 자에게는 동전 160文을 지급케 하였다. 그리고 동전의 주조발행은 사섬서에서 관장하고 동전을 불법적으로 주조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개국 초부터 거듭 논의 시도된 바 있는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시키는 문제는 세종대에 이르러 마침내 실현된 셈이다.

이후 조선정부는 중앙에서는 물론 경기도·경상좌우도 및 전라도의 각 지방에 鑄錢所를 설치하고 동전, 즉「조선통보」를 주조케 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화폐 유통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수량의 동전을 주조하는 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중요한 원인은 우선 거의 日本銅의 수입

에 의존하는 화폐 원료의 공급이 어려웠고, 처음 시도하는 동전주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주조시설이 미비하고 기술자 동원이 어려우며, 기술이 미숙하다는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정부당국은 세종 7년(1425) 정월까지 주조된 동전 12,537貫을 길일을 택해 통용하기로 하고, 또한 濟用監을 비롯한 중앙 각 관청과 각도 및 留後司에 각각 일정량의 동전을 頒給하였다. 그리고 동전 유통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독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그 해 2월에「不用銅錢者糾察條件」을 공포하는 동시에 동전을 유통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결정된 동전과 저화와의 比價는 1대 2였던 것이나, 동전과 미·포 등 물품화폐와의 비율은 확실히 알 수 없다. 동전을 저화와 함께 법화로 통용케 했으나 저화는 일반 유통계에서 전혀 통용되지 못하고, 행정권이 직접 작용될수 있는 조세의 납부수단으로 일부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세종 7년(1425) 4월에는 호조의 건의에 따라 저화의 통용을 중지하고, 저화 1매를 동전 1문으로 환수케 했던 것인데, 그 당시 저화 1매의 가치가 米 1승으로 比價된 셈이다.

이후 국가의 화폐 유통정책은 저화 못지않게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강한 정책적 의욕과는 달리, 동전 역시 저화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유통계를 지배하는 법화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화폐유통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은 실용가치가 작은 동전보다는 실용가치가 전제된 포화를 즐겨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시킨초기에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으나, 국가의 동전 유통방침이 완화됨에 따라 포화의 통용은 점차 활발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정부당로자들이 "포화는 만년을 지나도 폐단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포화의 통용 즉 물품화폐인 포화의 통화기능은 활발해졌으며, 상대적으로 법화로서의 동전의 기능은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저화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한 동전 유통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저화제를 다시 채용하는 문제가 제기 논의되었고, 세종 27년(1445) 12월 마침내 저화제 채용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저화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동전을 유통 보급한 목적이 그러했듯이, 동전 유통정책의실패를 보완해서 다시 저화제를 채용한 것은, 조선정부가 왕조 초기부터 일관되게 시도한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실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저화제를 다시 채용한 정부 당국은 국가의 수입지출을 화폐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적극적인 저화 유통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화의 법화 로서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는 반면 물품화폐인 포화의 유통은 실질적으로 유통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經國大典》의 '戶典'이 頒行된 세조 6년 (1460)에 이르러서는 물품화폐인 포화의 품질과 체재를 규격화하여 저화와 함께 법화로서 결정하였다. 이처럼 포화를 저화와 함께 법전에 법화로 규정 했다는 사실은. 곧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를 실시하려는 화폐정책의 실패를,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명목화폐제도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조선사회의 하계를 의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 민중이 저화나 동전은 입거나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그 당시의 사 회 경제적 여건속에서 실용가치가 있는 포화의 통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저 화의 통화기능이 위축되고 포화가 유통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성종 23년(1492) 11월에 종래 저화로 수납하던 各司의 徵贖을 모두 포화로 거둬들이게 되자, 지방에서는 저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종 7년(1512) 경에는 "저화는 《경국대 전》에 기록되어 있을 뿐 근래에는 專廢되고 사용되지 않는다"의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저화가 전혀 통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그 이후 대략 1670년대 말에「常平通寶」가 유일한 국가의 법화로 채택 유통되기까지 저화는 유통계에서 사라지고 포화가 역시 물품화폐인 미 및 칭량은화와 함 께 공ㆍ사 유통계를 지배하였다.10)

^{9) 《}中宗實錄》 권 15, 중종 7년 정월 병인.

¹⁰⁾ 李鍾英과 宮原兎―의 앞의 글 참조.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앞에서 조선정부가 건국 초기에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시도한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를 대강 살펴보았다.

그러면 그 당시 조선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화나 동전을 공·사 유통계에 유통 보급시키려 하였는가. 다음에서는 정부당국이 시도했던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으로서 어떠한 것이 채택 실시되었는지를 대강 살펴보고자 한다. 저화의 유통 보급방법과 동전의 그것과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통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화나 동전의 유통 보급방법을 구분해서 논급하지는 않겠다.

첫째, 조선정부는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먼저 일반 민중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화와 동전을 중앙과 각 지방으로 반급하였다. 정부당국이 저화나 동전에 법적통용력과 경제적 신용을 부여하여 중앙과 각 지방으로 반급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다. 즉 중앙 및 지방관청에서 저화와 동전을 일반 민중에게포·미 등과 교환해 주고, 관리녹봉의 일부를 화폐로 지불하며 煙戶米를 화폐로 환산해서 지급하였다. 또한 화폐로써 정부당국이 수용한 민간재산을 보상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며, 각종 보상에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화나 동전을 중앙과 각 지방으로 반급하기 위해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 시도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의 화폐가반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화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는데저해적 요인이 되었다.11)

둘째, 조선정부는 포·미 등 물품화폐와는 달리 저화나 동전이 실용가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명목화폐라는 점에서, 마땅히 법적 통용력과 경 제적 신용을 부여하여 그것이 계속 통용될 수 있는 법화로서의 유통가치를

¹¹⁾ 李鍾英, 위의 글. 田壽炳, 앞의 글. 元裕漢, 앞의 글(1982).

보장해야만 하였다. 화폐의 유통 보급을 위한 이와 같은 조치로 저화나 동전 의 통용 초기에는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화폐 유통가치를 포·미 등 물 품화폐에 비정하였고, 또한 화폐 유통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폐의 兌換力 내지 공신력을 강화하여 화폐 유통가치를 유지 보 장시키려 하였다. 즉 정부당국은 화폐의 태환력 내지 공신력을 강화시킴으로 써 그 유통가치를 유지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소유한 미·두·포·잡물 등 을 시가에 따라 화폐로 환산하여 일반 민중에게 방출하는 한편, 일반 유통계 에 화폐유통량이 부족할 때 민간소유 잡물을 화폐로 구매하였다. 또한 같은 목적에서 화폐의 품질악화를 막기 위해 파손된 화폐를 새 것으로 교환해 주 고 화폐의 위조행위를 엄벌했으며, 국가가 규정한 화폐 유통가치대로 상품거 래를 하지 않고 화폐 유통가치를 자의로 변경 조절하는 자를 엄벌하기도 하 였다. 정부당국이 화폐 유통가치를 유지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조선 후기에는 물론 고려시대의 화폐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 상의 조치들 가운데 특히 정부 소유 각종 물자를 방출하는 것은 방출물자의 수량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법 화인 저화나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정부 소유의 각종 물자를 방출하 고 화폐의 태환력 내지 공신력을 강화하여 그 유통가치를 유지 보장하려는 조치도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셋째, 조선정부는 각종 세납의 화폐화를 통해서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당국은 巫女業稅, 匠人稅, 行商稅, 座商稅, 京中家基稅, 魚稅, 船舶稅, 科田·功臣田·寺社田稅, 奴婢身貢, 時方雜貢, 地方官廳歲貢 및 納贖 등을 저화나 동전으로 징수하고자 하였다. 화폐를 유통 보급하기 위해 각종 세납을 화폐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비교적 빠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은 일반 민중이 국가에 세납할 저화나 동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연후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민중은 세납의 부담도 무거운 데다가 세납할 화폐를 마련하기 위한 어려움까지 겹쳐서 정부당국을 원망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모순과 폐단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이 적극 추진된 조선 후기에도 흔히 일어나고 있었다.

넷째, 조선정부가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는 데 화폐정책의 목적이 있었던 만큼, 저화나 동전의 유통 보급방법으로서 포와 미, 특히 포화의 통용을 금지하려 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이 엄벌로써 포화의 통용을 금지해 보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포 생산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화나 동전의 유통 보급방법으로서 포 생산의 금지를 시도해보았지만 역시 실패하자, 시중의 포를 매입하여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민중에게 나눠줌으로써 물품화폐인 포화는 영구히 통용하지 않는 동시에 저화를법화로 사용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민중에게 인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재정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발전에따른 자연발생적 포화 유통형상을 정책적으로 억제하기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일시의 정책적 의지의 발로에 그쳤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도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전유통보급방법으로 일반 유통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화의 통용금지가 시도된 일이 있었다.

다섯째, 조선정부는 소극적이긴 했으나 저화나 동전을 시중의 상업거래에 교환매개로 사용케 함으로써 일반 민중의 화폐가치 인식을 증진시키는 등, 보다 본질적이고 기초적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을 채택 시도하였다. 한 예를 들어보면, 모든 상점에서는 매매거래에 교환매개로서 저화와 포화를 각각 절반씩 사용할 것이며, 판매자가 저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매입자가 저화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된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화폐유통 보급방법은 조선 후기는 물론, 고려시대에도 동전등을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택 시행된일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상거래를 통해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커져서 기존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상설점포를 신설하여 상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여섯째, 조선정부는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布貨의통용을 엄벌했듯이, 국가의 화폐유통을 보급규정에 따라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엄벌하였다. 화폐의 사용을 기피하는 자에 대해 '直行囚禁'한다던가, 또는 '廣示警策'한다는 기록을 보면 정부당국이 얼마나 형벌 위주의 화폐 유통정책을 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폐의 유통가치를 유지보장하기 위해 일반 민중이 국가가 규정한 화폐 유통가치대로 상품거래를하지 않고 자의로 화폐 유통가치를 변경 조절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정부당국은 조선 초기에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위해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제반 사회생산력이나 상품·교환경제의 발전수준을 감안하여 국가의 화폐정책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민중의 화폐가치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힘쓰기 보다는, 대체로 금지나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주도 내지 형벌 위주의 화폐유통방법을 채택실시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새왕조 초기에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던 정부당국의 강력한 정치의욕이 그 당시의 화폐정책 운용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12)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대체로 인류가 직조기술을 터득하게 되면서부터 각종의 직물, 즉 의료는 중요한 교환수단의 하나가 되었다. 인류역사 발전과정에 보이는 이와 같은 일반적 현상은 한국 역사 발전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직물, 특히 마포를 비롯한 포화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중요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 화폐사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철전·동전·은화·저화 등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했던 고려시대에는 마포를 비롯한 각종 직물이 곡물과 함께 중요한 물품화

¹²⁾ 위와 같음.

폐로서 일반 유통계를 지배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고려시대의 일반유통계를 지배한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의 관행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고려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포·미 등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화폐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부당국은 이상과 같은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는 布貨의 통용을 금지하려 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생각될 때는 물품화폐인 포화를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와 병용하거나, 마·면포 등 포화를 법화로 규정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조선정부는 왕조 초기에 그 당시의 일반 유통계를 미와 함께 지배하고 있던 포화를 어떻게 법화로 규정하여 유통 보급시키고자 하였는가. 다음에서는 조선정부가 개국 초기에 일시 방편적 조치로 포화를 저화나 동전과 병용하려던 단계를 넘어서 포화를 법화로 규정해 유통 보급시키려 했던 역사적 사실을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초기에 포화를 법화로 통용하자는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저화의 통용문제가 결정된 태종 원년(1401)이었다. 사실상 그 당시 법화로 만들어 사용하자고 했던 布幣는 엄격히 말해서 뒷날 법화화한 正布나 常布와는 규격내지 체재가 다른 것이었다. 중국의 지폐법인 鈔法을 본따서 내구성이 저화보다 강한 담청색의 正5升布를 3척·2척·1척의 길이로 잘라, 문양을 넣고만들어서 저화 대신 법화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朝鮮布貨」라고 한 포폐는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저화보다는 뒷날 법화로 사용된 포화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13) 어쨌든 조선 초기에 저화와 함께 법화로 통용될 것이 논의되었던 포폐는 태종이 저화의 통용을 적극 주장하였기 때문에 한갖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조선정부는 태종 원년부터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을 추진했으나 동 3년에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7년 후인 동 10년에 저화 유통정책을 다시 채택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당국은 저화 유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품화폐인 포화의 통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

^{13) 《}太宗實錄》 권 1, 태종 원년 4월 정축.

으로 저화의 유통 보급을 적극 시도하였다.

그러나 저화의 유통은 부진하고 실질적으로는 포화가 일반 유통계를 지배하게 되자, 일시의 방편적 조치로서 화폐물품인 포화를 저화와 병용시키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태종 15년(1415)에 이르러 마침내 楮貨全用令을 폐기하고 포화의 통용을 허용함으로써 포화는 더욱 통용이 활발해졌다. 이같이 포화가 공적 지위를 회복해가는 것을 계기로 하여, 정부당국은 태종 15년 4월에 布帛稅, 즉 着稅의 징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착세의 징수는 저화를 유통 보급시키려는 데 동기가 있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포화의 법화로서의 위치를 강화해준 셈이었다.14)

이후 조선정부는 세종 5년(1423) 9월에 저화 유통의 부진을 보완할 목적에서, 동전 즉「朝鮮通寶」의 주조유통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동전을 저화와함께 법화로 병용하다가 동전을 전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전의 유통이저화 유통처럼 부진하게 되자 세종 27년(1445) 12월에는 다시 저화를 법화로유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조선정부가 포화·미곡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화와 동전의 유통은 부진하고 일반 유통계는 포화가 미곡과 함께 지배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국대전》호전이 반행된 세조 6년(1460) 8월에는 포화를 國幣, 즉 법화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국폐를 3등으로 나누었는데, 상등은 5승포, 중등은 3승포, 하등은 저화였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20분의 1에 해당하는 經印稅를 납부한 포화에 한하여「朝鮮通幣」라는 도장을 찍어 주어, 그러한 포화만이 법화로서 통용될 수 있게 하였다.15) 포화에 도장을 찍어주고경인세를 정수하게 된 동기가 확실치는 않으나, 화폐의 기본적 구성요건인체재와 품질을 일정하게 규격화하여 포화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수증대에도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포화의 經印제도도 세조 10년(1464) 8월에 그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속출하고 간사한 무리가 발호하

^{14) 《}太宗實錄》 권 29, 태종 15년 4월 병자.

^{15) 《}世祖實錄》 권 21, 세조 6년 8월 을묘.

게 된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16) 포화의 경인제도 폐지 이유 중에는, 포화는 실용가치가 전제된 물품화폐이기 때문에 그것의 통용을 돕기 위한 경인제도의 실시와 같은 조치가 절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 대간 살펴본 바 세조 6년(1460)에발행된 《경국대전》호전 국폐조에서 포화를 법화로 규정한 내용은 그로부터 14년 후인 성종 5년(1474)에 공포시행된 《경국대전》국폐조에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되고 있다.

국가의 화폐는 포화와 저화를 통용한다. 正布 1필은 常布 2필에 준하고 상포 1필은 저화 20장에 준하며 저화 1장은 米 1升에 준한다. 모든 微贖에는 모두 저화를 사용하고 값을 주고 살 때는 포화와 저화를 반반씩 사용한다.

조선정부가 성종 5년에 이처럼 포화를 주로 하고 저화를 종으로 하는 화폐제도를 공포 시행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저화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포화만이 미곡과 함께 유통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이후 포화는 실용가치가 전제된 자생적 물품화폐이기 때문에 17세기 70년대 말부터「常平通寶」가 유일한 법화로서 유통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도 일반 유통계에서 지속적으로 화폐기능을 담당 수행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정부가 왕조 초기에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통용금지 대상이었던 포화를 법화로 규정 통용케 하였다는 사실은, 화폐정책의 한계 내지 그 당시 사화 경제발전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당국이 법화로 적극 보급시키려던 저화의 유통이 사실상 중단되고, 법화로 규정된 포화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도 지속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화폐정책의 실패 또는 조선사회의 명목화폐 수용력이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6) 《}世祖實錄》 권 34, 세조 10년 8월 기해.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조선정부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추진한 화폐정책이 실패하자, 그 보완책으로 포화를 법화로 규정하여 저화와 병용하는 화폐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화폐정책 역시 그 한계 내지 조선사회의 명목화폐 수용력의 한계로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일반 유통계는 포화 및미곡을 비롯한 각종 물품화폐가 지배하는 시기, 즉 저화나 동전의 유통시도이전의 물품화폐 유통체제로 복귀하였다. 정부당국은 이같이 물품화폐가 지배하는 상품·교환경제의 현실 내지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화폐제도 개혁방안으로서 箭幣의 주조유통을 시도하였다.

조선정부는 세조 10년(1464) 8월 정부당로자들이 모여 국가의 화폐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폐를 법화로 주조유통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포화·저화 및 전폐의 통용문제가 제기 논의되었는데, 전폐의 주조 유통은 대다수 당로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세조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결정되었다. 즉 세조는 역대 왕조의 화폐사용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점과 전폐는 비록 옛사람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라 해도 軍國에 유익하다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17) 세조가 전폐를 주조 유통하게 되면 군국에 유익하다고 한 것이 원활한 화폐통용에 의한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기여를 의미한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폐 주조 유통을 바로 저화의통용이 극히 부진하고 또한 포화가 법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었던 經印제도가 폐지되는 시기에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전폐의 주조 유통을 결정한 동기가 화폐제도를 개혁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폐는 평상시에 법화로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화살촉,즉 무기로 사용한다고 한 데서 전폐 주조 유통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군사적 목적에 있었다는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세조 초기에 여진

¹⁷⁾ 위와 같음.

족이 국경지대를 자주 침범해서 국방에 대한 국왕의 관심이 컸고, 그 당시 정부당국은 水牛角이나 箭竹 등 활 만드는 재료를 확보하는 데 힘썼던 것 이다.

이처럼 세조 10년(1464) 8월에 주로 정부당국이 화폐정책 및 군사정책적 배려에서 전폐의 주조 유통을 결정하고, 그 해 11월에 전폐의 주조를 지시하였다. 그 당시 주조를 지시한 전폐는「八方通貨」또는「柳葉箭」이라고 했던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그 체재와 품질 및 주조 계획량을 대개 다음과같은 것이었다. 연간 주조량은 10만 개, 전폐의 형태는 버드나뭇잎 모양, 鏃의 길이는 1치 8품, 莖의 길이는 1치 7품, 箭幣文은「八方通貨」, 교환비율은 전폐 1개에 저화 3장, 소재는 鐵이었다는 것이다.18) 전폐는 주조명령을 내린 뒤 11월 말 경에 주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폐의 주조발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물이 전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폐의 주조유통에 대한 전후의 사실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수 없다.

그러나 조선정부가 전폐의 주조유통을 시도한 사실을 통해서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전폐를 법화로 주조 유통하게 된 동기가 저화나 동전에 비해 실용가치가 더 큰 화폐를 만들어 쓰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폐를 유사시에는 화살촉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폐의 주조유통을 결정하게 되었던 동기에는 화폐정책 내지 경제정책 외적인 군사정책적 배려가 강하게 작용되었다는점이 바로 그것이다. 전폐를 주조 유통하려 했던 사실을 화폐가치관이나 화폐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저화나 동전의 통용을 시도했던 시기의 그것에 비해 일보 후퇴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전폐의 주조 유통시도는 실용가치 중심의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액면가치 중심의 명목화폐유통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진보적인 것이었기 보다는, 그것을 전환시키려다실패한 데 대한 반동 내지 전·후자를 절충하려는 화폐정책적 배려에 중요한 동기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전폐의 주조유통을 시도한 15세기 중엽의

^{18) 《}世祖實錄》권 34, 세조 10년 11월 임술. 元裕漢, 앞의 글(1982).

조선사회는 저화나 동전 등을 법화로 통용하는 명목화폐제도를 보수적 반동 없이 수용할 수 있으리 만큼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도 못했지만, 또한 실용가치 중심의 전폐나 포ㆍ미 등 물품화폐가 저항없이 지속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경제발전이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 그리하여세조조에 있었던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는 그 중요한 동기가 화폐정책 외적인 정책적 고려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폐의 주조유통을 결정 지시하는 데 그쳤을 뿐 실현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화폐사 발전과정에서 볼 때 명목화폐제의 도입시도기(10세기 말~16세기 말)의 후반기(14세기 말~16세기 말)에 해당하는 조선 초기의 화폐 유통정책시행과정을 대강 살펴보았다. 그러면 조선정부가 청량금은화의 통용이 금지되어 있던 조선 초기에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화폐 유통정책이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가. 다음에서 조선 초기 화폐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한다.

첫째, 조선 초기의 제반 사회생산력과 상품·교환경제발전은 미숙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실용성이 없는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당시 사회생산력과 상품·교환경제발전이 위축된 것은 조선정부가 중농억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쇄국정책으로 대외무역이 억제되었으며 한·수해로 흉년이 자주 들었다는 사실들이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의 화폐가치 인식은 저화나동전은 추워도 입을 수 없고 주려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수준이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둘째, 조선 초기 화폐 유통정책이 실패한 또다른 중요한 원인은 자연스러운 화폐경제 내지 상품·교환경제 발전과정에 필요한 청량금은화 통용을 금지하고 그 원료생산도 통제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정부는 금은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明에 대한 금은 歲貢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국내외의 상업거래에 칭량금은화 통용을 금지하고 금은광의 개발을 통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고려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왜란 이후 칭량은화의 통용을 허용한 사실은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셋째, 조선정부는 저화나 화폐원료의 부족과 기술인력의 동원난으로 적당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수량의 화폐를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은 조선 초기 화폐 유통정책 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동전원료의 주종을 이루는 동은 조선정부의 일관된 광업개발 소극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 생산이 부진하여 거의 일본동의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원료의 공급난은 더욱심각했던 것이다. 동전 주조기술의 미숙성과 함께 동전 주조기술 인력의 동원난 역시 화폐의 주조 내지 화폐 유통적책 추진과정에 적지않은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17세기 말에 동전, 즉「常平通寶」가 법화로서 유통기반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비교적 다량의 일본동을 수입하여 화폐원료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넷째, 조선 초기의 화폐 유통정책이 실패하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화폐 유통정책 자체의 모순성과 그 운용이 불합리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당시 화폐 유통정책의 모순성과 운용의 불합리성으로서는 대개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민중으로 하여금 국가의 화폐 유통정책을 신뢰하게 하고, 화폐는 사용에 편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데소홀하였다. 자연발생적인 상인 내지 상업조직을 통해 화폐를 유통 보급시키기 보다는, 정세의 화폐화를 과도하게 추진해 급진적으로 화폐를 유통 보급시키기 보다는, 정세의 화폐화를 과도하게 추진해 급진적으로 화폐를 유통 보급시키기 보다는, 정세의 화폐화를 과도하게 추진해 급진적으로 화폐를 유통 보급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화폐 유통정책을 시행한 보다 중요한 목표가, 제반사회생산력과 상품·교환경제를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을 조달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화폐 유통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당시 사회경제적 현실에 알맞도록 순리적이고 점진적으로 화폐를 유통 보급하려는 방향이 아니라「금지」또는「엄벌」위주의 방법으로 화폐를 유통 보급시키려 하였다.

요컨대 대체로 이상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로써 그 성격이 특징지워지는

조선 초기의 화폐 유통정책은 정책담당자들의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치와 그 당시 사회의 화폐수용력과의 격차를 합리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 포ㆍ미 등 물품화폐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조선 후기에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 유통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역사적 선례로서 참고 활용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 통용하던 화폐가 조선 초기의 일부지역에서 잠정적으로 통용된 일이 있듯이, 조선 초기에 주조된 동전이 조선 후기에 그대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초기의 화폐 유통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고는 하지만, 저화나동전의 통용을 시도했을 때마다 제반 사회생산력과 상품ㆍ교환경제 발전을자극하게 되고, 일반 민중의 화폐가치 인식은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 조선 초기의 화폐 유통정책이 그 후기에 미친 영향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명목화폐 수용력을 증진시켜 마침내 17세기 70년대 말부터 동전, 즉「상평통보」가 국가의 유일한 법화로서 확대보급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元裕漢〉

4. 무 역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조선 초기의 대외무역 활동과 그 성격 내지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그 당시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와 조선이 교체된 14세기 후반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급격한 정세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대륙에서 원과 명이 교체되고 인접한 安南에서 黎氏王朝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足利幕府가 성립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은 정치적 변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국가를 이룩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을 모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조선정부도 사대교린을 특징으로 하는 새국가의 대외정책을 채택 추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사의 이상은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실현되었다고 본다. 이에 조선정부의 제반 국가정책 목표는 궁극적으로 완성단계의 민족통일국가에 적합한 문물제도를 정비 확립하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중농억말적 경제제도, 사회신분 계급질서 및 성리학적 敎學체계를 정비·확립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사대교린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선정부가 개국 초부터 사대교린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민족통일국가에 알맞은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세의 안정은 물론 명·여진·일본·유구 등과의 관계 안정이 필요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주변 민족들과의 부단한 항쟁으로 점철된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 대한 역사적 반성은 대외관계의 평은 내지 안정을 위해 사대교린정책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정부가 개국 초부터 명에 대한 사대외교와 여진·일본 등에 대한 교 린 외교를 퍼는 등 사대교린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의례로서 문 화교류와 함께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즉 대명 사대외교에서 조선의 조 공에 대한 명의 賞賜, 또는 대여진·일본 등과의 교린외교에서는 그들의 진 상에 대한 조선의 回賜와 같은 형태의 관무역과 사행에 의한 사무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조선정부가 개국 초부터 추진한 사대교린 정책은 조선 초기의 대외무역활동과 그 성격 내지 역사적 의의를 규정하는 기본적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조선정부의 사대교 린정책 수행과정에서 명·여진·일본·유구 등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명과의 무역

태조 이성계는 사대의 예로써 명과의 외교관계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폐쇄

적이고 소극적인 명의 외교정책이 원인이 되어 양국관계는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종대 이후에는 조선에 대한 명의 외교정책 병화로 조선정부의 명에 대한 사대외교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전되어, 정치적으로는 별다른 변동없이 2백 년간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과 명 사이에 경제·문화적 교류가 본궤도에 올라 원활해진 것은 세종 11년(1429) 명에 대한 금은 세공이면제된 것을 전후한 시기부터였다. 조선에 과중한 부담이 되었던 금은 세공을 우·마·포 등으로 대납하기로 결정을 본 이후부터 성종조까지 조선정부의 명에 대한 사대교린관계는 여진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온을 유지할수 있었다.

조선정부가 왕조 초기부터 명에 대해 사대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몇 차례의 정기 및 임시 사행을 보내고, 명에서는 수시로 특별한 목적으로 사절을 보내왔다. 명은 처음부터 '三年一頁'을 규정하였으나 조선정부는 도리어 실리를 취해서 사행을 더욱 자주 보내게 되었다. 즉 조선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正朝使・聖節使・千秋使를, 얼마 후에는 冬至使를 더하여 매년 네 차례의 정기사행과, 謝恩使・奏請使・陳奏使・進賀使・陳慰使・進香使・辨誣使・參覈使 등의 임시사행을 명에 보냈다. 대체로 명에 보내는 사행은 正使・副使・書狀官・從事官・通事・醫員・寫字官・畵員 등 40여 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록 조선정부가 명에 대한 외교관계에서 명분상 사대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명으로부터 내정과 외교면에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사대외교 관계에서 조선과 명과의 사이가 전혀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의 정기 및 임시사행을 통해 사대외교의 예로써 조공을 명에 보냈고, 명은 조공에 대한 답례로 賞賜나 賜與를 하였다. 이처럼 조선과 명 사이에는 조공과 상사 등의 형태로 양국 사이에 이른바 관무역이 행해지는 동시에 사행의 사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조선정부는 선진문물을 수입하고 정권의 국제적 승인을 얻어 국내통일에 활용하는 동시에 관무역과 사무역을 통해 경제적 외등을 취할 수 있었다. 한편 명은 명목상의 종주국으로서 그 전래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역시 조선과의 관무역과 사무역을 통해 경제적 욕망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정부는 태종대부터 금은 세공이 면제된 세종 12년(1430) 2월 이전까지 정조·성절 및 천추사 등 정기사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물품을 명에 조공으로 보냈다. 즉 金銀器皿・螺鈿梳亟・白綿紬・各色苧布・龍文簾席・各色細花席・豹皮・獺皮・黃毛筆・白綿紙・人蔘・種馬 등을 보냈다. 이상 정기사행에 따르는 조공품 이외에도 수시로 파견되는 사은・진하・주청사 등 각종 임시사행에게도 의례적 예물로서 여러 가지 물품을 명에 보냈다. 조선정부가 왕조 초기에 이상과 같이 정기 및 임시 사행을 통해 각종 물품을 조공으로 보내면, 명은 조공에 대한 답례물로서 賞賜 또는 賜與라는 명목으로 각종 綵段・자기・약재・예복・서적・악기・보석・弓材牛角・문방구 등을 조선에 보내왔다.

이상 조선정부가 명에 보낸 조공품 중 금은 세공은 그 당시 국내 금은 생산량으로 볼 때 과중한 부담이었다. 즉 매년 금 150냥과 은 700냥을 명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 금은 세공은 조선정부로서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금은 세공을 면제받기 위한 외교적 절충을 시도하여, 마침내 세종 11년(1429) 금은 세공을 우·마·포 등으로 대납하게 되었다. 이로써 세종 12년(1430) 2월 이후부터 명에 보내는 조공품 중에는 금·은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白苧布 4필・麻布 254필・滿花席 23장・滿花方席 30장・黄花席 40장・彩花席 25장・人蔘 40觔이 증가되고 馬 84필・紬 100필 등이 새로 공물 품목에 들어가게 되었다.1) 국내에서는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다는이유로 금은 세공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조선정부는 금·은생산을통제하는 동시에 민간인의 금은 사용은 물론 대외유출도 엄금하였다. 그리고금은 세공의 면제로 금·은의 중국유출이 금지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 소량의 금·은이 국내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

세종 11년(1429)에 명에 대한 금은 세공이 면제된 이후 조선과 명 사이에 조공과 상사 등의 형태로 행해진 관무역이 별다른 잡음없이 지속되는 한편, 양국의 행사에 의한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조선의 사행은 북경의 東平館에서, 또한 명의 사행은 서울 남대문안 太平館에서 각기 유숙하게 되었는데,

¹⁾ 姜聖祚, 〈初期 朝・明의 公貿易考〉(《關東大學論文集》9, 1981).

²⁾ 劉元東, 〈商業〉(《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313쪽.

양국의 사행은 각기 동평단과 태평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조선정부는 태평관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명의 사행과 민간인과의무역거래를 처음에는 허용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의 사행이 가져온 다량의 값비싼 물품을 모두 관청에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민간인의 사무역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 한 예로서 세종 24년(1442) 1월에 명의 사행이 가지고 온 물품을 모두 팔아주기 위해 한성ㆍ개성의 부상들로 하여금 質入케 했고, 그러고도 매진되지 않자 평안ㆍ함경도를 제외한 6도 인민에게 정포와 마포를 가지고 와서 質入할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명의 비단류와 조선의 11승 이하의 苧布ㆍ麻布ㆍ豹皮ㆍ人蔘・丹木・白礬・胡椒 등이 태평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역에서 거래되었다.3) 이상 관무역과 사무역 이외에도 조선 상인과 명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양국이 법으로 금하는 潛貿易이 이루어졌다.4)

흔히 조선 초기 명과의 관무역 및 사무역을 통해 명나라보다는 조선측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과 명의무역에서 경제적 득실을 논할 때, 다음의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로 조선의 수출품 중에는 금·은·우·마 등과 같은 생산재 내지 자본재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반면, 조선의 수입품은 비단·약재·문방구 등 소비품이나 사치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명으로 보낸물품에 비해 더 많은 품질 좋은 물품을 명으로부터 수입하여 일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보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조선이 명과의 무역에서 반드시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여러울 것 같다. 조선에서 수입한 명의 물품은 국내의 소비·사치풍조를 조장하는 동시에, 금·은·우·마 등 생산재 내지 자본재의 대량 국외유출은 궁극적으로 사회생산력과 상품·교환경제의 발전을 위축시켰을 것으로 짐작되기때문이다. 이같은 견해에 대한 논거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淸에 금·은을주고 비단・털벙거지·약재·완구류 등 소비·사치품을 수입해 오는 대청무

³⁾ 劉元東, 위의 글, 314쪽.

⁴⁾ 朴南勳、〈朝鮮初期 對明貿易의 實際〉(《關東史學》1, 1982). 延正悅、〈朝鮮初期 貿易現況과 그 法規에 관한 研究〉(《法史學研究》4, 1977).

역을 국내의 소비·사치풍조를 조장하고 해당 수입품의 국내 생산력을 위축시키게 되는 등 국가의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단을 직접수입할 것이 아니라 그 직조기술을 도입해 와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또한 조선 초기에 국내에서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은 세공을 면제받으면서, 조선정부가 금은광 개발을 통제하고 금은의 사용을 엄금했던 사실은, 금은 생산의 위축은 물론 사회생산력 내지 상품·교환경제발전을 저해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6) 이와 같은 사실로써 조선과 명과의 무역이 국내 사회경제발전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진과의 무역

조선정부가 교린정책으로 대응한 여진은 제반 사회생산력의 미숙으로 주요 생활 필수품을 조선과 명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여진은 의식주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면 종종 북방 변경에 침입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이에 조선정부는 침략해 오는 여진을 방어, 소탕 내지 정벌하는 한편 회유무마책을 썼다. 회유무마책으로서는 여진의 귀화를 권장했으며, 조선의 명예관직을 받은 여진인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1년 또는 수년에 몇 차례씩 서울에 와서 進上과 回賜・賞賜 형태의 관무역을 할 수 있었다. 이상조선과 여진 사이의 진상과 회사・상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 명과 조선 사이의 朝貢과 賞賜・賞與와 본질적으로 성격을 같이 하는 관무역이라 할 것이다.

조선과 여진 사이에서는 관무역 뿐만 아니라, 여진인이 유숙하는 동대문안 北平館을 중심으로 일반 상인이 참여하는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북평관의 사

⁵⁾ 元裕漢,〈星湖 李翼의 商業制限論〉(《人文科學》59, 延世大, 1988).

一一,〈朝鮮後期 實學者의 鑛業論研究-茶山丁若鏞의 鑛業國營論을 中心으로 マー〉(《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 1985).

⁶⁾ 金柄夏、〈李朝前期의 貨幣流通-楮貨流通을 中心으로ー〉(《慶熙史學》2, 1970). 元裕漢、위의 글(1985).

무역은 사무역에서 어떤 종류의 물품이 교역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금·은·보석·12승포·마포 등의 교역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그 이외의 물품의 거래는 묵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북평관의 사무역은 진상과 회사·상사 형태인 관무역의 부속적 활동이었지만, 관무역 이상의 교역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7)

그리고 여진은 관무역과 사무역을 통해서는 그들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국경교역을 위해 貿易所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태종 5년(1450) 5월 공식적으로 鏡城・慶興 두 곳에 무역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두 곳에 무역소를 설치 운용하게 된 동기는 여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필수품인 염・철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함으로써 변방의소요를 예방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다.8)

이처럼 조선 초기에 조선과 여진 사이에 관무역·사무역 및 무역소 교역이 이루어졌고, 이같은 무역을 통해 쌍방간에 여러 가지 토산물들이 교환되었다. 즉 조선은 馬·土豹·土豹皮·熊皮·鹿皮·海靑·鷹·魚膠 등 주로 천연산물을 여진으로부터 수입하고, 여진에게는 금·은·보석·저포·마포·면포·鍮鐵農具·식기·紙物·米豆·鹽醬 등 가공품과 식료품을 수출하였다. 이상 조선과 여진간의 거래 품목의 내역으로 미루어 보아서, 대체로 목축과수렵에 의해 획득한 조잡한 모피류 등 천연산물을 조선에 수출하고 의료·식료 등 생활 필수품과 철제농기구 등을 수입해 간 여진쪽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9)

4) 일본과의 무역

조선정부가 여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린정책으로 대응한 일본은 조선과 명으로부터 침탈행위나 평화적 교역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키 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의 일본에 대한 교린정책은 여진에 대해서 그

⁷⁾ 李仁榮,〈鮮初女眞貿易考〉(《震檀學報》8, 1937).

⁸⁾ 李仁榮, 위의 글.

⁹⁾ 李相佰,《韓國史-近世前期篇-》(震檀學會, 1962), 134~141\.

러했듯이, 왜구침탈을 무력으로 응징하는 한편 회유책으로서 관무역이나 사무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양면적성격을 띠게 되었다.

태조는 즉위 이전에도 왜구를 토벌하는 데 힘썼지만, 그 이후에도 海防을 엄히 하는 한편 일본막부에 사람을 보내 왜구의 금압과 동시에 무역거래를 촉구하였다. 이에 일본도 回禮使를 보내는 등 조선에 대해 성의를 보이기 시 작함으로써 양국의 교통은 점차 활발해졌다. 일본 서해안의 대호족들은 조선 에 사절을 보내 왜구금압을 약속하고 俘虜를 쇄환하는 대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얻어갔고. 그 뒤에는 대호족을 비롯해 서부 각 지방의 소토호들 까지 매년 使船을 보내 무역거래를 시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조선과 가장 밀 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대마도 宗氏였다. 대마도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조선 과 일본간의 중개 역할을 맡게되는 특수한 사정도 있지만, 원래 토지가 협소 하고 척박하여 식량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 이었다. 그리하여 대마도는 이미 고려 말부터 朝貢과 동시에 미곡을 回賜받 는 관계에 있었다. 또한 조선정부도 대마도가 왜구의 소굴이라 하여 가장 우 대했고, 대마도는 통상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대마도와의 관계 뿐만 아 니라 일본의 중앙정권인 足利幕府와의 관계도 호전되어 막부의 사절과 조선 의 報聘使・回禮使・通信使 등 사절의 왕래가 빈번하게 되었다. 한편 이들 일본인에게는 여진의 경우처럼 회유무마책을 써서 受職倭人이라 하여 관직 을 주어 우대했고, 귀화한 向化倭人에게는 토지와 집을 주어 국내 거주를 허 락하였다. 또한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興利倭人에게는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과 귀환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지급하였다.

이상 조선정부의 회유무마책은 본래 왜구 방지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왜구가 庇仁·海州 연안을 침탈하는 등 창궐하자 왜구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조선정부가 세종 원년(1419)에 대마도를 정벌하는 강경책을 쓰게된 것은 왜구의 창궐이 그 소굴인 대마도 도주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그 뒤 세종은 다시 회유무마책을 써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역을 통제하고 海防도 공고히 하는 등 和戰양면책을 썼다. 이같은 정책이 점차 효과를 거두어 세종대 이후로는 왜구의

침략회수가 격감되고, 그 지역도 남해안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정부가 일본인의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은 그들의 교역활동지역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태종대부터 조선정부가 지정한 일정한 포구에만 興利倭船의 출입을 허락하고 그 곳에 倭館을 두어 교역과 접대장소로 삼게 하였다. 그 이유는 교역의 특수권익을 허용받은 일본인의 수가늘어감에 따라 이들을 접대하는 일이 번거롭고 재정소모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태종 초에 이미 지정했던 동래의 富山浦・熊川의 乃而浦, 그리고 세종 8년(1426)에 추가로 지정한 울산의 鹽浦 등 3포에만 일본인의 왕래를 허락하고, 교역과 고기잡이가 끝나면 곧 돌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정부는 세종 25년(1443)에 대마도주와 癸亥約條를 맺고 일본 歲遣船의 수와 歲賜米의 양을 제한하였다. 즉 진상무역선인 세견선의 수를 제한하여 대마도주 종씨의 세견선은 50척, 기타는 대개 1내지 3~4척으로 하였고, 대마도주에게 사급하는 세사미도 미・두를 합해 2백석으로 제한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과의 외교 내지 무역거래는 대체로 왜란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이상에서 교린을 표방한 조선 초기의 일본과의 관계는 왜구를 방지하기위해 회유무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일본은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관계의 진전과정을 대강 살펴보았다. 이같은 양국관계의 진전과정에서 주로 일본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로서는 우선 일본의 진상과 조선의 回賜 형태로 행해지는 官貿易이 있다. 또한 浦口와星州 花園縣 및 서울의 倭館・東平館・亞平館 등의 장소에서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가 불법적 무역거래라 하여 금지하였던 潛貿易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

대체로 조선 초기의 일본 진상품 중에는 銀‧銅‧鉛‧硫黃‧刀劒‧蘇木‧ 丹木‧白礬‧甘草‧砂糖‧胡椒‧水牛角‧象牙 등이 있고, 진상에 대한 조선 정부의 回賜品은 綿布‧米를 비롯해 苧布‧麻布‧人蔘‧花文席‧豹皮‧書籍 등이었으며, 서적 중에서도 대장경에 대한 일본측의 욕구는 컸던 것으로 보 인다. 이상 진상과 회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관무역 이외에도, 사무 역이나 잠무역을 통해서 관무역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물품이 조선상인

¹⁰⁾ 李鉉淙,《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韓國研究院, 1964), 126~216\.

과 일본상인 사이에 거래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11)

흔히 조선 초기 일본과의 교린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관무역·사무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역거래에서 주로 일본측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조선은 손실을 감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조선정부가 일본에 수출할 면포·마포·저포 및 미곡 등 생활 필수품을 대량 조달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적지 않았고, 또한 일부 수입품이 사치품에 속했다고 하는 등 조선과 일본간의 무역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동·연·유황·수우각 등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당부분의 물품은 동전·유기·무기 및 각종 공산품의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었음은 물론, 그 중 특히 은은 칭량은화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중국과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로 소비재를 수출하고 생산재 내지 자본재를 수입하는 조선의 일본과의 무역거래는 국내의 사회생산력과 상품·교환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는 등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조선측이 얻은 경제적 이득 역시 작게 평가함 수 없을 것 같다.12)

5) 유구·남만과의 무역

조선 초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 명·여진·일본 이외에도 琉球·南蠻과 도 무역거래가 있었다.

대체로 한국 역사상 조선정부가 교린외교로 대응한 유구와 교섭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엽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유구의 中山王 察度는 외국의 승인을 받는 동시에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명 및 고려와의 교섭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창왕 원년(1389) 고려에 사신을보내는 한편 토산물을 공납하면서 '奉表稱臣'하였고, 이에 고려정부는 유구에 報聘使를 파견한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조 원년(1392)에 유

¹¹⁾ 李鉉淙, 위의 책.

¹²⁾ 李鉉淙. 위의 책.

宮原兎一,〈朝鮮初期の銅錢について〉(《朝鮮學報》2, 1951). 韓相權,〈16世紀 對中國私貿易의 展開〉(《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元裕漢,〈朝鮮後期 銅錢原料의 供給形態〉(《人文科學》32, 연세대 1974).

구의 中山王은 계속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청신의 예를 다하였다. 즉 태조 6년(1397) 유구는 사신을 보내 왜구로부터 매입한 조선인을 송환하고, 정종 2년(1400)과 단종 원년(1453)에는 사신을 보내 예물을 헌납하였다. 또한 세조대에 세 차례에 걸쳐 대장경을 요구한 일이 있고, 성종 2년(1471)에는 일본인을 대한 것처럼 公認 歲遣船으로 왕래하게 했으며, 그리고 조선의 관직을 받은 자도 있었다.13)

한편 유구는 토지가 협소하고 척박하여 해외무역을 생게로 삼는 곳이었기때문에 그들의 토산물과 安南[베트남]·暹羅[삼] 등의 남장산물을 중계하여한때 각국 상선의 기항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과 유구의 교통은 비교적 빈번하여 자주 漂民을 송환해 왔으며, 또한 조선 상인이나 표민이 유구에 기항하는 자가 많았다. 이들 조선 상인들은 유구인과 함께 말락카 등 남양무역에도 종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유구에는 조선에 오는 해로를 잘 아는 사람이 적어서 그 곳에 거주하는 일본인 승려나 상인이 사신이 되어 조선에온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사신들이 조선에 바친 공납물은 蘇木・胡椒・香料・砂糖・錫・水牛角 등 남방 산물이었다.14)

남만은 섬라와 爪哇[자비] 등을 말하는데, 섬라는 일찍이 공양왕 3년(1391)에 奈大 등 8명을 고려에 보내 토산물을 바친 일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2년(1393)에 張思道를 사절로 보내와서 그에게 禮賓卿의 직을 주었으며,15) 그 6년(1397)에도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16) 그들이 조선에 바친 공납물은 대개 蘇木・東香・刀・甲・銅器 및 土人 등이었다. 또한 조선초기 조와와의 관계를 보면 태종 6년(1406)에 陳彦祥을 사신으로 보내 왔으므로 조선정부는 그에게 書雲副正의 직을 주어 보냈다. 그 뒤에도 조와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어 火鷄・孔雀・鸚鵡・鸚哥・沈香・龍腦・胡椒・蘇木・香 등과 여러 종류의 蕃布를 공납하였다.17) 그러나 조선정부가 교린외교로

¹³⁾ 劉元東, 앞의 글.

¹⁴⁾ 李鉉淙,〈南洋諸國人의 來往貿易에 對하여〉(《史學研究》18, 1964). 李相佰, 앞의 책, 142~143쪽.

^{15) 《}太祖實錄》 권 3, 태조 2년 6월 갑인.

^{16) 《}太祖實錄》 권 6, 태조 6년 8월 정유.

¹⁷⁾ 李鉉淙, 앞의 글.

대응한 유구와 남만이 진상한 공물에 대한 回賜物로 어떠한 것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정부는 유구와 남만의 사절을 후대하여 관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고온 선박을 수선해주고 衣服・笠靴・正布・綿布・黑馬布・白苧布・虎皮 및 書籍 등을 회사했던 것으로 보인다.18) 유구와 조선 사이에서는 이상과 같은 진상과 회사 형태의 관무역뿐만 아니고, 비록 명・여진・일본의 경우보다는 소규모일지라도 사무역이나 잠무역 거래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 조선 초기의 유구 및 남만과의 무역은 명·여진·일본 등과의 그것 과는 동기와 성격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이상 3국과는 국제적이해관계가 엉켜있는 인접국들이었기 때문에, 3국과의 무역은 사대교린외교의 수행과정에 따른 무역으로서 무역외적인, 다시 말하면 외교적 요인이 무역거래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할것이다. 그러나 유구와 남만은 조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교거래보다는 무역거래에 더 큰 비중을 두어,외교는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면이 더 크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유구·남만측의 진상품목과 조선의 회사품목을 비교할 때,조선은 대체로 사치성 물품을 받고 생활 필수품을 주었기 때문에 조선측이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구·남만의 진상품 중에는 조선 초기 국내에서 수요가 큰 錫이나 水牛角 등 각종 금속 수공업이나무기제조의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6) 대외무역의 성격

이상에서 조선 초기에 명·여진·일본·유구 등에 대해 사대교린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 나라와의 무역실태를 대강 살펴 보았다. 이같은 고찰을 통해 조선 초기 대외무역의 성격 내지 역사적 의의로 대개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¹⁸⁾ 李鉉淙, 위의 글.

일반적으로 한국의 근대적 국제무역이 1876년 개항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 조선 초기의 대외무역은 당연히 폐쇄적이고 소극적이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중세적 무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 의 대외무역은 당시 봉건정부가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중농억말정책을 실시 하여 사회생산력과 상품·교환 경제발전이 둔화된 상황에서 추진한 것이었 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대외무역에 비해 주목할 만한 발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봉건정부가 새 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 확립하는데 필요한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해 사대교린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외교적 의례로서 대외무역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에 명·여진·일본·유구 등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대외무역의 동기 내지 성격은 기본적으로 무역외적인, 즉 사대교린을 지향하는 외교적 요인에 의해 규정지어졌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과 명 사이에 조공과 賞賜의 형태로, 또한 조선과 여진·일본과의 사이에 回賜와 進上형태로 이루어지는 관무역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무역과 양국 상인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잠무역에서는 경제적이득 추구에 몰두하는 등 무역거래의 동기 내지 성격이 거의 외교외적인 경제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의 대외무역의 동기 내지 성격이 경제외적인 외교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었거나, 외교외적인 경제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었던 간에 상호무역거래의 결과에 대한 경제적 득실을 따져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에서 논급한 바 있듯이 주로 생산재 내지 자본재를 수출하고 소비·사치품중심의 물품을 수입하는 명과의 무역거래에서 조선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은 주로 생활 필수품이나 생산기구 등을수출하고 모피류 등 조잡한 천연산물을 수입하는 여진과의 무역거래에서도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체로 생활필수품 등 소비·사치품을 수출하라고 각종 생산재 내지 자본재를 수입하는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는 조선측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유구와 남만과의교역은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고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조선측은 그들을 후

히 대접한다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무역에 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조선 초기 대외무역의 경제적 득실을 확실하게 따져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대외무역, 즉 명·여진·일본·유구 등과의 무역거래는 봉건정부가 개국 초에 표방한 사대교린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고, 또한 선진외래문물을 수용하여 완성단계의 민족통일국가체제에 상응하는 집권적 조선왕조의통치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할 것이다.

〈元裕漢〉